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 방안

▶ 책임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국 문 초 록

1997년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의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유엔, 유니세프,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적인 개발·구호사업기관과 아동관련 국제 민간사업기관에서 권리기반접근이 본격적으로 적용·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권리기반접근을 새롭게 이해하고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인권관련 이슈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되어 왔던 권리기반접근은 아동·청소년분야에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Child Rights Programming, CRP)사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이 의견 존중, 전문 인력을 위한 인권교육 사례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리기반접근을 실천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교육 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해 시설유형별로 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각 실천현장의 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인권관련 이슈들이 드러났다.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치·자율 활동에서의 지도자의 역할과 자연권시설에서의 안전문제, 상담복지시설에서는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 문제, 청소년보호시설인 쉼터에서는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규제와 사생활보호 등의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해 의무이행자인 청소년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권리기반접근의 실천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 유형별로 청소년지도자가 알아야 할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이슈,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리실현을 촉진하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권리기반접근,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음.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주요원리로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기반접근에 초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시설·환경에서 청소년지도자가 대면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 본 연구는 2010년에 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를 발간한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주요 원리로써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권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탐색하고, 또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내용을 연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I 장은 서론, II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주요원리로서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 요소를 탐색하였음. III장은 권리기반접근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교육 내용으로 실제 권리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색, 편집하여 제시되었으며, IV장은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였음.
-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 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청소년인권관련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는 시설유형을 고려한 인권의식과 인권이슈 등 인권교육 요소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전문가들이 해당내용을 집필하였음.

3. 주요결과

1) 권리기반접근 개요

- 권리기반접근은 기존의 국제적인 구호 및 개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자선이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아닌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분야에서도 권리주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증진과 함께, 이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지역사회, 국가와 같은 의무이행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권리기반접근과 관련하여 유엔에서는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와 포용, 임파워먼트, 책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과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는데, 특히 권리에 기반한 실천을 위해서는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인권기준과의 연계와 같은 5가지 원칙(PANEL)에 주목할 있음.
-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의 적용사례로 볼 수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Child Rights Programming, CRP)사례, 아동·청소년복지 및 관련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권리지향(rights-oriented) 모니터링 및 평가,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아동개입 모델,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실천을 위한 교육사례(CRED-PRO) 등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책 등에서 어떻게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음.
-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청소년 관점에 대한 존중은 결국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정도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관건임. 권리기반접근에서는 교사나 정책담당자와 같은 의무이행자의 경우 아동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관련 인권 이슈

-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결과, 활동시설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으며, 청소년 의견 수렴의 중요성과 청소년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같은 내용들이 파악되었음. 특히, 자연권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보호나 규제, 인권침해와의 대립문제들이 나타났음.
-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실에 가져오는 문제들로 심리·정서적 문제, 가정 및 학교폭력, 아르바이트 시 인권침해, 또 자살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으며, 비밀보장(예, 자살생각, 임신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학대피해 아동의 신고거부 및 부모와 격리되길 원하지 않는 문제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인 청소년보호시설인 쉼터종사자와의 면접에서도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에 대한 비밀보장,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이나 규제, 사생활 침해, 쉼터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그리고 청소년에 의한 쉼터종사자의 폭력피해 등이 인권관련 이슈들로 도출되었음.
- 청소년지도자들은 종사하는 시설 특성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 문제나, 성폭력 피해, 그리고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나타났음.

4.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인권교육 내용

- III장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권리기반접근의 실천에 초점을 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여전히 낯설었던 아동·청소년인권관련 기본사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청소년시설유형별로 청소년지도자가 알아야 할 인권의식과, 관련 지식 및 정보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과 함께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관련 이슈,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대처방법들에 대한 사례들도 함께 소개하였음.
-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의의와 권리기반접근의 원리 및 관련 사업들의 사례들이 포함되었음.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한 권리기반접근으

로써 청소년의 참여활동사례,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인권주제를 통한 프로그램의 권리기반 접근에 대한 예시들이 제시되었음.

-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내용에는 청소년인권침해와 상담자의 역할, 상담윤리와 내담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자의 인권의식 확립 및 청소년상담현장에서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음.
-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해서는 쉼터시설에서 어떻게 권리기반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어떤 인권의식이 요구되는지와 함께 청소년보호 실천현장에서의 청소년인권이슈와 권리에 기반한 대처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음.

5. 제언

-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과 권리기반접근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과 증진을 위해서, 권리주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역량강화와 인권교육의 중요성, 청소년시설유형별 인권관련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권리기반접근 실천,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시설환경 조성에 대해 제언하였음.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제2장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의 원리와 주요 요소 탐색	9
1.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원리로서의 권리기반접근	11
1) 권리기반접근의 개념과 원칙	11
2)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 적용 예시	18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요소 탐색	32
1) 조사 개요	32
2) 청소년활동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34
3)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40
4) 청소년보호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44
제3장 권리기반접근의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내용 구성(안)	51
1.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53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이해	53
2) 권리기반접근의 이해와 적용	67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의 주요내용	82
1)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82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106
3)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125

제4장 결 론	141
1. 요약	143
2. 향후 과제	145
1) 권리주체자인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인권교육의 중요성	145
2)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과 권리기반접근 실천에 대한 강조	146
3)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시설환경 조성	147
참 고 문 헌	151

표 목 차

〈표 II-1〉 자선기반 · 욕구기반 · 권리기반 접근	12
〈표 II-2〉 권리기반 접근과 다른 접근들과의 차이	15
〈표 II-3〉 CRP(Child Rights Programming)의 핵심 요소	19
〈표 II-4〉 CRP(Child Rights Programming)의 권리기반접근을 위한 질문	21
〈표 II-5〉 CRED-PRO: 아동보건 전문인력의 아동권리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내용	27
〈표 II-6〉 CRED-PRO: 학교 심리학자의 아동권리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내용	29
〈표 II-7〉 청소년지도자 대상 FGI 및 심층면접 내용 예시	33
〈표 III-1〉 아동 · 청소년 인권 관련 연혁	58
〈표 III-2〉 클러스터별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60
〈표 III-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62
〈표 III-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64
〈표 III-5〉 한국의 주요인권협약 비준 현황	76
〈표 III-6〉 상상청 일정표	93
〈표 III-7〉 청소년인권학교 일정표	94
〈표 III-8〉 ‘나의 새로운 변화’ 프로그램 주요 세부내용	98
〈표 III-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107
〈표 III-10〉 청소년상담사의 인권침해 상담사례 대응 유형	107
〈표 III-11〉 내담자 권리에 관한 상담관련 학회 윤리강령	109
〈표 III-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 청소년 상담자 윤리강령 비교	112
〈표 III-13〉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	113
〈표 III-14〉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125
〈표 III-15〉 청소년 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인권 유형	131

그림 목차

【그림 II-1】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와권리기반 조직의 역할	14
【그림 II-2】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허용하는 4가지 요인: ‘목소리’ 모델	23
【그림 III-1】 권리기반접근의 방향성	69
【그림 III-2】 PANEL의 다섯가지 원칙	71
【그림 III-3】 Hart(1997)의 참여사다리	72
【그림 III-4】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77
【그림 III-5】 청소년활동과 역량과의 관계	86
【그림 III-6】 벽화골목만들기 ‘담장’ 중간보고서 중 사진자료	91
【그림 III-7】 나의 새로운 변화 활동사진	9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대한 강조가 계속됨에 따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일반공무원, 아동관련기관·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를 포함한 건강관련 전문가 등)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후 국가차원에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위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소년보호와 관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도에 아동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일하는 전문직 및 종사자들의 아동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분야에서도 청소년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자를 포함한 청소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한 일부 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도 청소년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도에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를 개발하여 권리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청소년지도자를

1) 본 장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아동·청소년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사이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수단 강화와 더불어, 아동과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식증진을 위한 추가노력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²⁾(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6).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또 청소년지도자 교재가 2010년 말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최근 이슈를 탐색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엔에서는 1997년 이후로³⁾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로⁴⁾ 관심을 받고 있는 권리기반접근(Righ-Based Approach, RBA)을 토대로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교육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일부 국제 개발사업과 NGO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으며(Park, 2013; 박현정, 2012; 유해정, 2009; 손혁상, 장지순, 2011)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적용은 찾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아동구호 및 인권관련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아동분야 사업에서의 시도를 포함하여 그 사례가 많지 않으며⁵⁾, 특히 청소년실천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논의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지도자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소년수련

2) 해당부분만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to raise awareness by, inter alia: b) Ensuring adequate training on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이하 하략

3) 1997년에 착수된 유엔개혁프로그램(United Nations Programme for Reform)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산하 모든 기구의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인권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한 이래로 수많은 유엔기관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에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해 왔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4) 권리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 또는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의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BASPIA라는 NGO에서 2006년 국내최초로 ‘인권에 기반한 개발(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category=253&page=6&document_srl=774(2014. 6. 22))

또한, 2011년에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권리기반접근의 중요성과 더불어 각 국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에 따른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과문서에 담겨져, 권리기반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한국인권재단a, 2012, p.87)

5) 2011년 국제아동인권센터(전 유엔아동권리위원장이인 이양희교수 대표)에서 개최한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이란 주제의 국제개발협력포럼에서 아동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이 언급된 바 있다.

관이나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청소년활동시설,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청소년상담복지 시설, 그리고 청소년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시작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2010)의 내용 보완에 대한 요청에서 출발하였으나,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원리인 권리기반접근과 또 이에 근거한 청소년지도자의 종사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아동·청소년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조명과 또 이를 근거로 한 청소년지도자의 종사자 특성별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권리기반접근을 새롭게 소개하고, 이에 근거해 가능한 새로운 해석을 더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종사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인권에 기반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시과제로서의 연구 성격과 또 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의 내용보완이라는 연구목적에 따라, II장에서는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인권관련 이슈 및 인권교육 내용 탐색을 중심으로, 그리고 III장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권교육 내용과 사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II장에서는 권리기반접근의 개념과 해외의 아동·청소년분야 적용 예시, 청소년관련 시설별 청소년지도자의 권리기반접근 및 인권의식, 그리고 대면하는 청소년관련 인권이슈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기초적인 인권교육 내용⁶⁾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6)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권리기반접근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III장에서 다시 설

청소년지도자가 대면하는 구체적인 청소년인권 이슈와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인권교육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Ⅲ장의 경우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교재로의 직접적인 활용요청에 따라 편집과 인쇄를 본 연구의 1장과 2장의 연구보고서 성격이 아닌 교재나 매뉴얼과 유사하게 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권리기반접근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은 주로 유엔과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국제적인 아동구호 및 인권보호 기관의 출판 자료나 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에 대한 적용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아 일부 제한적인 해외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2) 청소년지도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및 심층면접 실시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과 이와 관련한 욕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본 보고서에서의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팀장급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쉼터)의 상담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시설별 종사자 특성과 관련한 인권이슈 및 인권의식 내용 파악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쉼터 6곳을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권관련 이슈와 청소년지도자의 생각을 범주화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에서 기획한 청소년지도자와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하였고, 해당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청소년

명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적인 협약을 대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입안과 정책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Tobin, 2011)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청소년지도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써 본 보고서의 Ⅲ장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지도자와 권리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가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인권 및 청소년관련 시설 현장 전문가, 학계전문가, 관계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시설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관련 이슈와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2010년도 청소년지도자 권리교재 개발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형별 권리교재 개발진, 청소년지도자 권리교육 실시기관, 이외에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전문가 등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의 중간평가를 위하여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청소년학계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의 원리와 주요 요소 탐색

1.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원리로서의
권리기반접근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요소 탐색

제 2 장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의 원리와 주요 요소 탐색기

1.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원리로서의 권리기반접근

1) 권리기반접근의 개념과 원칙

권리기반접근은 1997년 유엔개혁프로그램 이후로 모든 유엔산하 기구의 국제적인 개발사업이나 구호사업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⁸⁾. 특히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최근의 많은 문헌들에서는 국제적인 발전/개발(Development) 맥락에 적용되는 모델로써 권리기반접근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Tobin, 2011).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인권관련 NGO들을 통해 그 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실천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⁹⁾.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Boesen과 Martin(2007)에 따르면, 권리기반접근은 인간은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needs)의 박탈은 권리가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인권은 단순히 신체적인 욕구의 개념을 넘어선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인간의 총체적인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권리는 항상 의무와 책임을 야기하는데, 권리에 대한 논의는 권리실현을 위해 누가 의무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무이행자(duty-bearers)의 행동(action)과 책무성

7) 본 장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8) 권리기반접근은 1986년 유엔총회에서 발전(Development)은 모든 인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누릴 자격이 있는 양도불가능한 인권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이후로 그 기원을 꼽기도 한다(Tobin, 2011).

9) 권리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은 RBA 또는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로 축약해서 논의되기도 하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의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BASPIA라는 NGO를 필두로 하여 한국인권재단을 통해 관련 담론이 진행되어 왔다. HRBA와 RBA의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of Children)은 아동(Children)과 인간(Human)의 용어가 반복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기반접근(Children's right-based approach), 또는 권리기반접근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Boesen,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이 최초로 적용된 개발 사업에서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전통적인 자선기반접근과 욕구기반접근과 비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II-1>에서 보듯이, 권리기반 접근은 과정과 더불어 결과에도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선이나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것(empowerment)을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에 대한 시혜적인 입장이 아닌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에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II-1 자선기반 · 욕구기반 · 권리기반 접근

자선 접근 (Charity Approach)	욕구 접근 (Needs Approach)	권리기반 접근 (Rights-Based Approach)
결과(Outcome)가 아닌 투입(Input)에 초점	투입과 결과에 초점	과정(Process)과 결과에 초점
자선의 증가를 강조	욕구(Needs)를 충족시킬 것을 강조	권리실현 강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자들의 윤리적 책임감 인식	욕구를 유효한 요청(claims)으로 인식	개인 및 집단의 권리를 법적 및 윤리적 의무이행자에 대한 요청으로 인식
개인들을 희생자로 간주	개인들은 개발 개입의 대상	개인과 집단은 그들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음
개인들은 원조(assistance)를 받을 만 함	개인들은 원조를 받을 만 함	개인들은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음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	문제의 즉각적인 원인에 초점	구조적 원인과 그것들의 징후에 초점

※ 출처: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pp. 9~10에서 발췌·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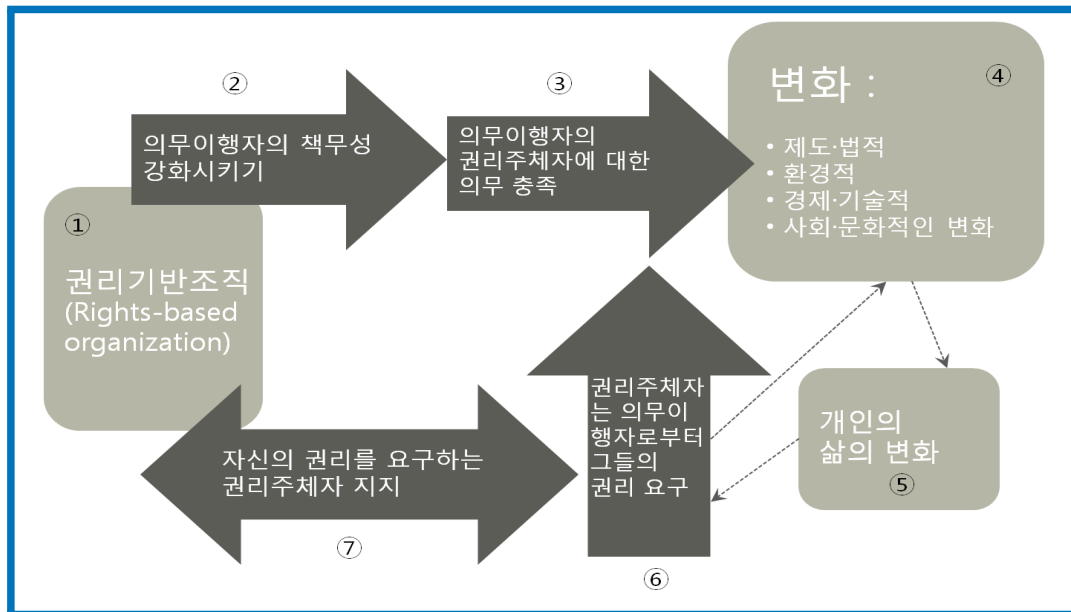
특히 권리기반접근은 과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권리실현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즉 권리기반접근은 권리주체자의 욕구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인권시스템에 따른 규범이나 원칙 등을 그 계획과 과정에 결합시키는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권리주체자의 요구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로써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충족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한

국인권재단a, 2012).

또한 권리기반접근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권리주체자에 대한 역량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권리주체자(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취약하고 힘이 없거나 차별받는 사람들)를 지지하며 인권침해의 원인을 지적하고 현재와 미래의 개인의 삶에 차이가 있도록 정책과 실천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또한 권리기반접근은 인간의 욕구나 개발(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해 대응할 의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이 아닌 권리로써 정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파워시키며, 자신의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Lansdown, 2005).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논의에서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권리기반접근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는 모든 인간은 권리주체자(a right-holder)이며, 인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자(a duty-bear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권리주체자는 권리의 자격이 있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의무이행자가 책무성을 갖도록 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이행자” 라고 할 수 있다(Boesen & Martin, 2007: 11). 인권의 의무를 충족시킬 전반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그 책임은 국회, 행정부, 지방정부, 판사, 사법기관, 경찰, 교사와 같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이들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은 법적 의무이행자를 의미한다(Boesen & Martin, 2007: 11).

[그림 II-1]의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와 권리기반 조직의 역할에 대한 도식은 이러한 권리기반 조직에서의 의무이행자의 역할과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과 환경변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도식에 따르면 ① 권리에 기반한 조직(rights-based organization)은 ② 의무이행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③ 의무이행자는 권리주체자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고 ④ 제도·법적, 환경적, 경제·기술적,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거쳐 ⑤ 간접적으로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⑥ 권리주체자는 의무이행자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⑦ 권리주체자와 권리기반조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권리기반조직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주체자를 지지한다.



※출처: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p. 12.

【그림 II -1】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와권리기반 조직의 역할

권리기반접근 채택에 있어 의무이행자의 책임감, 권리주체자의 참여, 그리고 평등과 비차별은 세가지 주요 원칙으로 간주되며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권리기반접근의 해석에 있어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Theis, 2003). 권리기반접근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이유로써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첫째로 인권에 명시된 인간과 개발에 대한 일련의 가치와 신념(즉 도덕적으로 옳은 접근이라는 믿음)에 동의하며, 둘째로는 권리기반 접근이 다른 접근과 비교해서 구호 및 개발(relief & development) 사업에 있어 수많은 실천적인 혜택을 가져와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권리기반접근의 지침이 되는 세 가지 중요원칙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① 인권의 실현을 촉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② 인권기준은 활동의 모든 단계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③ 권리주체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무이행자가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Lundy & Mcevoy, 2012: 4). 이 권리기반접근은 유엔산하 기관의 개발협력이나 개발프로그램 맥락에서 명료화되었지만, 아동 및 교육 분야에서 유엔기관과 비정부기구에 의한 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Lundy & Mcevoy, 2012).

표 II-2 권리기반 접근과 다른 접근들과의 차이

권리기반접근	다른 접근들
행동(Action)은 의무적이다.	행동(Action)은 자발적이나 선택적이다.
사람들은 법적인 청구권과 자격을 가진다.	사람들에게는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고 이런 욕구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빈곤한 사람들은 구호의 대상으로 도움을 받을만 하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이를 위해 원조받아야 할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예, 그 대상은 100%이다)	일부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예, 목표하는 대상이 100%미만일 수 있다)
개발 사업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은 권리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개발 사업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수혜자이다.
권리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희석되거나 빼앗길 수 없다.	누군가의 욕구는 어떤 문화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인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저지하는 권력구조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권력구조는 변화시키기 너무 어려우며 실용적인 방법은 그 구조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 질 필요가 있다.
개발의 행위자는 반드시 권리주체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공공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발은 기술관료적(technocratic) 과정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비록 특정상황에서 실용적인 차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권리는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욕구에는 위계가 있으며 어떤 욕구들은 다른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하다.

※ 출처: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 23의 내용을 재구성함.

권리기반접근은 또한 개발사업과 같이 보유 자원이 한정되었을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즉 우선적으로 보호할 대상을 정하고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될 때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한국인권재단a, 2012). 보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와 유니세프(2007)에서 정리한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ennan, Keenaghan, O'Connor, Kinlen, & McCord, 2011: 23~24)

- 보편성과 양도불가능(Universality and inalienability) : 인권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인정한다.

- 불가분성(Indivisibility) : 모든 권리는 동일한 위치를 가지며 위계에 따라 순위 매길 수 없다.
-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 하나의 권리의 실현은 다른 권리의 실현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평등과 비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모든 인간에게는 차별 없이 권리가 평등하게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아동을 개별적인 권리주체자(rights holders)로서 인정한다. 권리기반접근은 반드시 차별과 불평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참여와 포용(Participation and inclusion) :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아동의 맥락에서 아동주체(child agency)를 강조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관점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 권한강화(Empowerment) : 권리주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다.
- 책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Accountability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 우선적인 의무이행자(a duty bearer)로서 국가는 아동의 권리 의무를 충족시킬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주체가 아닌 행위자도 아동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이외의 또 다른 의무이행자들로는 비정부기구, 아동관련 기관들, 지역사회서비스, 교회 등을 포함한다(Blanchet-Cohen, Hart, & Cook, 2009). 부모 역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으로써 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5조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의무가 있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에 의해 정리된 권리기반접근과 관련된 이러한 7개의 원칙외에 특히 아동권리기반접근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2개의 추가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아동최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아동의 생존과 발달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른 아동의 전체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것 뿐 아니라 아동의 즉각적인 생존문제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 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이러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요구된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그동안 주로 국제적인 개발 사업이나 구호사업에서 논의되어 왔던 권리기반접근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권리기반접근은 현재 이주근로자 보호, 종교적·문화적 자산 보호, 교육, 공공이용 공간, 도시계획, 초기 아동기 등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Tobin, 2011). 예를 들어, 호주의 빅토리아 인권 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권리기반접근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분야, 공교육, 공중보건과 공공주택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Victorian HR Commission, 2008; Tobin, 2011에서 재인용). 또 권리기반접근을 건강 분야에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건강 분야에서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란 “첫째, 건강 발전을 위한 기본 틀로써 인권을 활용한다. 둘째, 보건 정책, 프로그램 또는 법률의 인권 관련 의미를 평가하고 이해한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건강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 시행, 감시, 평가하는 단계에서 인권이 필수적 요소가 되게 한다”(한국인권재단a, 2012: 90)로 보고 있다. 따라서 권리기반접근은 기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기본 틀로써 모든 정치·사회·경제영역에서의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의 일련의 운영단계에서의 기본 요소로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건강분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 및 내용에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권리기반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NGO와 인권관련 조직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이 법적인 접근 또는 윤리적인 접근으로 각자 활용되고 있어 권리기반접근의 이론과 그 이행에 차이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념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Chong, 2010, Hunter, 2012에서 재인용), 또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고, 의미가 분명치 않아 개인과 기관이 권리기반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접근의 활용이 맞는 것인지 평가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Tobin, 201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헌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권리주체자와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이행자로서의 책무성을 갖는다는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권리기반접근은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이들의 권리실현에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과 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편성, 불가분성, 상호관련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 임파워먼트, 책무성 등). 이러한 원칙은 권리기반접근

을 위한 (개발)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수행 및 평가과정까지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 to human rights standard)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한국인권재단a, 2012 : 87), 각 영어단어의 첫 문자를 통칭한 PANEL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후반부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교육 내용에서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이처럼 권리기반접근이 인권관련 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인권담론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아동인권과 관련한 문헌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Lundy & Mcevoy, 2012).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빈곤아동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권리기반접근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최근에 서구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에서 관련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사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직(의사를 포함한 보건 전문인력, 학교심리학자 등)의 권리기반접근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 적용 예시

(1) 아동사업 프로그램기획에 있어서의 권리기반접근

권리기반접근은 그 강조점과 범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관련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권리기반접근 프로그램의 핵심차원과 기본 원칙은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에게도 적합하며, 특히 참여, 임파워먼트, 주인의식의 개념과 아동을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s)로서 인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Lansdown, 2005). 권리기반접근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고, 침묵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하며, 제한된 자원을 아동의 건강, 교육, 주택, 영양 및 발달 욕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하에서 다루어져야 할 많은 영역에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가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Tobin, 2011)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에 대한 적용시도로써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에서의 아동권리 프로그램기획(Child Rights Programming, 이하 CRP)을 살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기획은 권리기반접근을 위해 발달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방법이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프로그램 기획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은 참여, 임파워먼트, 포용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 개념들은 비록 성인관련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해 아동권리 프로그램 기획에 적용되었다(Lansdown, 2005).

CRP는 권리기반의 구호활동과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이와 같은 특별한 접근은 아동이 인간으로써 뿐 아니라 성인과는 다른 고유의 특별한 욕구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국제적인 협약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과 일하는 개발 사업기관에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적용하기 위함이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RP는 아동권리, 아동개발, 응급상황 대처, 개발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개념, 그리고 경험들을 한데 묶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일반적인 인권원칙과 개념,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념과 원칙에 따른 CRP의 핵심요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CRP(Child Rights Programming)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내 용
아동에 대한 강조 (Focus on Children)	아동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
아동에 대한 전체적 관점 (Holistic view of children)	전략적인 선택과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있어 아동의 모든 측면 고려
책무성 (Accountability)	(국가와 같은) 본연의 의무이행자로부터 다양한 의무이행자들 사이에서의 아동권리의 촉진, 보호, 충족을 위한 책무성에 대한 강조(의무이행자 :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민간영역, 미디어, 아동보육전문가, 그리고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개인들까지 모두 포함)
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지 (Supporting duty bearers)	의무이행자가 기술적 지원, 예산지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한 고려
옹호(Advocacy)	의무이행자가 책임을 확실히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의 도구로서의 옹호, 공교육, 인식증진의 중요성
참여(Participation)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과 그 이상 수준에서의 아동의 효과적인 참여 촉진
비차별 (Non-discrimination)	가장 소외된 아동을 포함시키고 성별, 계층, 인종, 장애유무에 따른 차별에 도전하는데 전념

핵심 요소	내 용
아동 최상의 이익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모든 프로그램의 선택에서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과 함께 고려하기
생존과 발달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의 생존과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확실히 발달시키도록 전념하는데 초점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아동 (Children as part of a community)	가정, 공동체, 사회에서의 아동의 위치와 부모 및 다른 양육자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발달을 이끄는 역할을 이해함.
근본적인 원인과 광범위한 이슈 (Root causes and broad issues)	근본적인 원인과 즉각적인 침해에 대한 강조
파트너십 (Partnerships)	아동의 권리를 촉진, 보호,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십과 연합체 구축
정보와 지식 (Information and knowledge)	아동 자신,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핵심 의무이행자를 위한 아동권리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 촉진

※출처: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p.24~25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CRP는 가장 소외된 아동과 그들을 포함시키는데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비차별 원칙을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 CRP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성별, 장애, 민족성 등 정체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이슈에 초점을 두더라도, 아동의 정체성은 어떤 한 단면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아동들은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로 고통 받아서도 안된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또한 CRP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기초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배제되거나 소외된 집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아동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자가진단을 위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표 II-4>과 같다. 이 부분은 현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일과 조직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영역	CRP종사자 및 해당 조직과 관련된 권리기반 접근 질문
권리기반접근과 아동권리 프로그램 기획(p.26)	- 현재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접근법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접근이 CRP접근과 얼마나 잘 맞는가? - 현재 일하고 있는 방법과 CRP간 주요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 권리기반접근을 적용할 때 성인과 아동을 구별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가?
권리기반접근 원칙의 실천으로의 전환(p.36)	- 프로그램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을(비차별, 아동최상의 이익, 참여, 생존과 발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에서 아동을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포함시킬때 핵심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 귀하의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핵심 의무이행자는 누구인가? 지역사회, 지역, 지방,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의무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
아동권리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주기(cycle)(p.46)	- 프로그램 전략과 계획을 살펴보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을 가지고 필터링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으로부터 국가의 아동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떤 변화/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 수행하고 있는 일에 균형과 전략이 잘 혼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일하는 방법에서의 변화가 귀하의 조직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 귀하 조직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개입을 살펴보면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는가? 초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누가 귀하의 파트너인가? 파트너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영역)?
아동권리에 초점을 둔 조직은 권리기반 운영인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운영인가? (p. 54)	- 귀하의 조직이 직원들과 관련한 비차별이란 용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소외되고, 불공정하게 처우받거나 과소평가되는 직원들의 집단이나 직원 스스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가? - 어떤 기제(mechanism)가 개인과 조직의 학습을 지지하는가? - 개인의 수행에 관한 피드백은 어느 정도의 수준과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 귀하의 조직은 의사소통과 자문(consultation)을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별히 아동의 이익은 귀하 조직의 관리구조와 기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귀하의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미래의 취업능력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키는가? - 귀하의 조직은 아동보호를 위한 동의와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되는가? 파트너 조직도 포함하는가? - 직무에 대한 기술과 채용절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출처: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pp. 26~54의 해당 질문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2) 아동·청소년복지(well-being)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권리기반접근

아동·청소년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권리기반접근과 관련해서는 북아일랜드 울스터 대학 유네스코 연구소의 아동·청소년 복지 모니터링을 위한 권리기반접근의 적용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Kilkelly(2006)는 아동복지 모니터링과 관련한 권리기반접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며, 아동권리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자의 책무성은 사실상 국제법과 같이 명확하다고 강조하였다(Kennan et al.,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권리기반접근은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권리수단에서의 조항들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Kilkelly, 2006, Kennan et al.,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권리지향(rights-oriented) 모니터링과 평가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Blanchet-Cohen et al., 2009: 5)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아동을 위한) 개입이 아동의 권리, 복지, 건강, 발달을 존중하며,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아동을 위한) 개입이 아동의 권리, 복지, 건강, 발달에 식별할 만한 개선을 가져왔는지 결정한다.
3.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행되는 절차를 탐색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아동의 경험을 이해한다.
4. 아동의 욕구와 그들의 잠재력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프로그램과 서비스, 활동, 전략을 적용해야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이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인하고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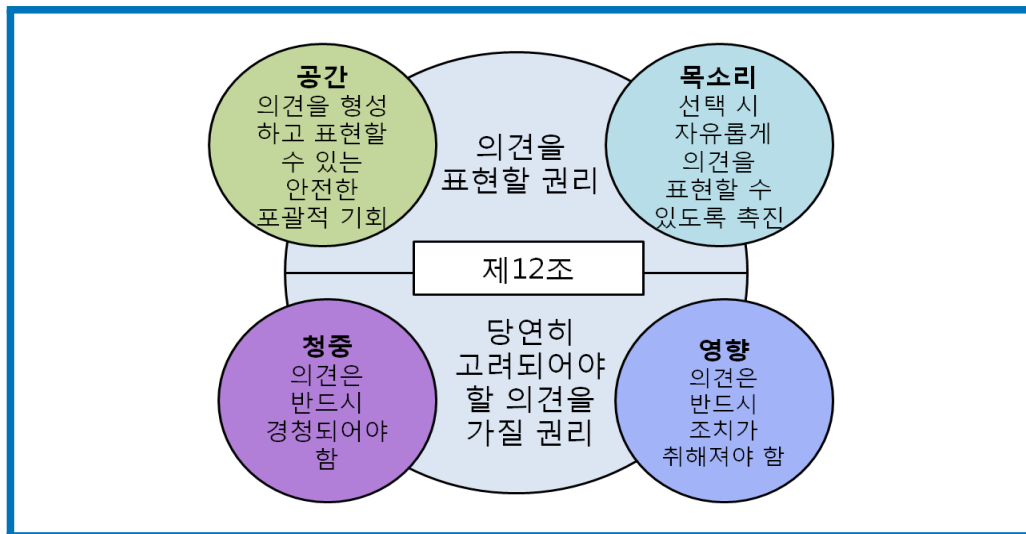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권리기반접근 모델들의 공통적인 단계로는 첫째, 법적으로 정부가 전념해야 하는 아동권리의무의 상세화, 둘째,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취한 정책과 법적절차의 확인, 셋째, 국가정책과 실천에서 이해되는 아동권리와 복지사이의 분명한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의 현실화와 관련된 절차와 아동의 성과(outcomes)를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측정을 들 수 있다(Kennan, et al, 2011).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목소리(의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에 서 강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의 권리는 그들의 삶의 경험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 절차에서 이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을 가리킨다(Kennan, et al, 2011).

아동복지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개념적으로 아동기 발달이론, 아동기 사회학, 그리고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체계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데, Bray와 Dawes(2007)은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개념적 틀은 대상 집단에 친숙한 이론적 이해와 접근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Kennan, et al, 2011에서 재인용).

(3)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권리기반접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의 아동의 관점에 대한 존중은 단순히 교육적인 실천의 좋은 모델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Welty & Lundy, 2013). 이와 관련하여 Lundy(2007)는 의무이행자(교사, 정책담당자 등)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성공적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이행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간(Space), 목소리(Voice), 청중(Audience), 영향(Influence)’의 4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Welty, E., & Lundy, L. (2013). A children's rights-based approach to involving children in decision making, p. 2.

【그림 II-2】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허용하는 4가지 요인: ‘목소리’ 모델

위의 그림에서 공간(Space)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의미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Lundy, 2007). 이 공간은 매우 포괄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범위의 관점이 추구되어야 하며, 아동의 참여가 단순히 말로 표현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어서는 안된다(Flutter & Rudduck, 2004; Lundy,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기 위한 안전하고 포괄적인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기관들은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Welty & Lundy, 2013: 2).

-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였는가?
-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가?
- 향후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들의 참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쳤는가?

또한 목소리(Voice)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아동의 권리는 성숙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숙하든 아니든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에 주목한다(Lundy, 2007). 아동은 의견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다(Lundy,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와 제13조는 아동이 구두나 자필, 또는 인쇄물이나 예술형태, 그리고 아동이 선택하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Welty & Lundy, 2013: 3).

- 아동은 자신의 의견형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이 마땅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청중(Audience)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Lundy, 2007). 아동의 의견을 경청할 책임이 있는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Welty & Lundy, 2013: 3).

1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의 관점을 위한 ‘청중’은 누구인가?
- 아동의 의견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절차가 있는가?
- 개인/단체는 의사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은 영향(Influence)으로써, 아동의 의견은 반드시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성인들은 아동을 경청할 뿐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Lundy, 2007).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떤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Lundy, 2007). 아동이 의견이 심각하게 고려되어 지고 또 그에 따라 확실히 행동이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Welty & Lundy, 2013: 4).

-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였는가?
- 아동의 의견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확실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가?
- 아동의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동들이 알고 있는가?
- 아동들은 결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피드백을 제공받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이행은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은 한편, 아동의 또 다른 권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Welty & Lundy, 2013). 공간·목소리·청중·영향력 모델(Space, Voice, Audience and Influence)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특징적인 면을 개념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며 현재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잠재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Lundy, 2007). 또한 무엇보다 권리주체자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개입시키고, 공간(space)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voice)를 격려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청중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 스스로를 효과적인 변화의 매개체로서 임파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Welty & Lundy, 2013).

(4) 아동·청소년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위한 권리기반접근 교육사례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보육교사, 경찰 등과 같은 전문직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책임감을 충족시키려면, 아동의 인권에 대해 정통하여야 하며, 그들이 일하는 모든 수준에서 인권에 기반한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Lansdown, Robinson,

& Hart, 2012).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CRED-PRO(Child Rights Education for Professionals)이 구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의 아동권리와 발달을 위한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ild Rights and Development, IICRD)에 근거지를 두고 Oak재단의 후원을 받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니세프, WHO, 그리고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영국의 소아과 및 아동보건왕립대학(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과 같은 국제적인 전문가집단과 함께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다(Lansdown, et al., 2012).

CRED-PRO는 생태체계의 이론적 틀 내에서 아동과 관련된 전문직 실천에 아동권리를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료로써 인터넷상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적인 자료를 생산해 내고, 관련된 모든 전문직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적용 가능한 아동권리의 기초적 모듈(Module)을 만들어내며, 관련 전문직 간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CRED-PRO, 2012).¹¹⁾

현재 CRED-PRO의 일환으로써, IICRD를 주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의 보건 전문 인력을 위한 아동권리와 아동법 커리큘럼, 탄자니아의 전문가를 위한 아동권리 커리큘럼,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된 소아과 전문 인력을 위한 아동권리 커리큘럼, 콜롬비아에서 활용될 보건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매뉴얼,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보건 전문 인력을 위한 국제커리큘럼 등이 있으며, 현재 학교 심리학자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실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모듈이 개발되어 검토의견을 취합·시범적용하는 단계에 있다(CRED-PRO, 2012).

이 중 아동·청소년과 일하는 전문직의 권리기반접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아동보건 전문 인력과 학교 심리학자의 인권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내용의 일부를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그들의 전문직관련 정책, 개인적인 실천, 건강보호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그리고 아동기 질병 및 사망률의 원인에 기초한 아동을 위한 옹호활동들에 있어 아동권리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Lansdown, Heykoop, & Hart, 2008). 이를 위하여 빅토리아 대학의 아동권리·발달 국제연구소(IICRD)는 CRED-PRO의 일환으로써, 보건서비스와 아동옹호를 위한 아동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실질적인 전략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11) CRED-PRO 홈페이지의 설명요약 <http://www.cred-pro.org/page/curricula-1>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Lansdown, et al., 2008). 이 커리큘럼의 목적은 아동·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 인권원칙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보건 전문 인력들이 소아과진료와 아동옹호를 위한 실천에서 인권 원칙에 기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 5개의 모듈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ansdown, et al., 2008).

표 II-5 CRED-PRO: 아동보건 전문인력의 아동권리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내용

모듈	제목	내용
1	아동: 발달, 욕구, 권리	아동발달, 욕구, 잠재력과 권리간의 관계를 다룬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접근을 위한 기초	아동권리를 실현시키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강점에 기반한(strength-based), 문화에 기초한 발달론적 접근을 소개한다.
3	보건의료실천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하기	개인 보건실천가와 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재의 실천을 검증하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관련된 기회들을 확인한다.
4	지역사회보건체계에서의 아동권리 존중하기	지역사회 보건체계에서의 보건실천가의 역할을 검증한다. 현재의 실천과 정책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강점들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확인한다.
5	옹호자로서의 보건전문인력	보건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함께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옹호자로서의 보건실천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출처: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08). CRED-PRO Child Rights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p. 7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이 각각의 모듈들의 내용은 ‘교육목적’과 ‘활동’ 및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 주제와 관련하여 꼭 읽어야 할 참고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두 번째 모듈인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접근을 위한 기초”에 대한 한 활동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활동 예시 : 현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토론

(Activity 2.1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Rights)

- 아동을 위한 인권개념과 이 권리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어떻게 다양한 권리들이 아동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본다.
- 목적
아동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권리에 더 친숙해지며, 지역사회와 국가에서의 아동의 권리실현을 생각해본다.

○ 활동설명

아동권리협약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이 다음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것이 유용하다.

1.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 중 귀하의 지역사회와 나라에서 가장 지지받는 권리 다섯 가지와 가장 침해받거나 무시 받는 권리 다섯가지를 찾아본다.
2. 아동권리 실천에 반하여 더 차별받는 특별한 아동집단이 있는가?
3. 비교적 더 지지받거나 더 침해받는 (위 1번의) 권리목록에 대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아동최상의 이익”(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개념은 보건전문직의 일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 토론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을 수 있다. 귀하의 지역사회의 아동권리의 현실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 본다.

1. 귀하의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권리가 지켜지는지, 또는 침해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예를 들면, a)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b) 지역사회의 모든 또는 일부 아동의 의견이 경청되거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생각해 본다.
2. 여자아동, 장애아동, 또는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실천에 반하는 특별한 집단의 아동이 차별받는 정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3. 만약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아동권리를 위반하는 정부주체가 있는가? 의사, 교사와 같이 아동과 일하는 전문직인가?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삶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존중되고 있는가? 권리를 누릴 자격이나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특정 집단의 아동이 있는가?
4. 전문직들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함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개념이 있는가?

※ 출처: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12). CRED-PRO Child Rights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pp. 28~29에서 발췌·요약.

이외에도 아동분야 전문가들의 인권관점에서의 실천을 위한 CRED-PRO의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심리학자(school psychologist)를 위한 커리큘럼이 개발과정에 있다. 이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사이버상에서의 의사소통과 가상공간에서의 학습과 관계로의 이행 등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아동의 복지와 학습, 발달의 개념화를 위한 새로운 맥락이 요구되면서 학교 심리학자와 학교기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CRED-PRO, 2012). 이에 따라 아동의 복지와 학습, 발달을 위한 권리기반접근(right-based approach)의 적용은 개념화를 위한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 심리학자의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와 아동옹호에 적용될 수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CRED-PRO, 2012). 학교심리학자를 위한 권리기반접근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은 미국의 툴레인 대학의 학교심리학과 전문가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국제프로그램(Child Rights Education for Professionals, 이하 CRED-PRO), 국제학교심리학협회(International School Psychology Association, ISPA)의 전문적 기준과 실천, 그리고 아동복지와 옹호위원회(Child Well-Being and Advocacy Committees)의 합동 프로젝트로써, 검토 및 수정과 시범적용을 위해 CRED-PRO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¹²⁾. CRED-PRO의 학교심리학자의 아동권리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II-6>과 같으며, 앞서 제시한 아동보건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커리큘럼보다 좀 더 상세화 되어 있다.

표 II-6 CRED-PRO: 학교 심리학자의 아동권리기반 실천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내용

모듈	제목	내용
1	생태체계 내에서의 아동 발달욕구와 권리	생태체계 틀 내에서 아동발달, 욕구, 잠재력, 그리고 권리 간의 관계를 다룬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 권리접근을 위한 기초	아동권리를 실현시키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강점에 기반한, 그리고 문화에 기초한 발달론적 접근을 소개한다.
3	아동권리와 학교 심리학자	생태체계관점 내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학교심리학자의 가치, 역할, 책임감을 고려한다.
4	실천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 개별 전문직과 실천가의 역할	개별 전문가로서 실천할 때에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학교 심리학자의 역할을 고려한다.
5	실천체계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 학교에서의 복지, 학습, 발달 촉진	체계이론관점에서 학교환경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심리학자의 역할을 검증한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실천과 정책, 그리고 조직체계의 강점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다.
6	아동권리옹호자로서의 학교 심리학자	아동복지, 학습, 발달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결정요인을 고려한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는 환경을 창출하는데 옹호자로서의 학교 심리학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7	사회정의의 틀 내에서의 아동 지지	어떤 국가나 맥락에서 실천하는 것과 관계없이 학교 심리학자는 아동이 그들의 충분한 학습과 개인적인 잠재력을 성취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가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모든 기회에 아동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지하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8	책무성 : 사회정의와 아동권리서비스의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정의와 아동권리 정책 및 실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을 이해한다.

※ 출처: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12). International School Psychology curriculum. 발췌·정리.

12) CRED-PRO의 학교 심리학자 위한 교육 프로그램 http://www.cred-pro.org/group/internationalschoolpsychologycurriculum?xg_source=activity

학교심리학자를 위한 아동권리관점 실천을 위한 <표 II-6>의 커리큘럼 중 세 번째 모듈인 ‘아동권리와 학교 심리학자’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 중 하나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활동 예시 : 의무이행자로서의 학교 심리학자

(Activity 3.2 : School Psychologist as Duty Bearer)

○ 목적

1. 아동의 삶의 모든 수준을 연결하고, 상호영향을 미치는 - 아동의 생태환경에서 중간체계(mesosystem)로서의 - 학교 심리학자를 이해한다.
2.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의 학교 심리학자의 책임감을 검증한다.
3. 아동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생태체계와의 협업방법을 설명한다.

○ 활동설명

학교 심리학자의 근무 지침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의 이념과 함께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전체 집단이 함께 “어떻게 제3조항이 학교 심리학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수 있는가”와 같은 간단한 토론에 참여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아동 최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생태환경적 모델을 사용하면서 중간체계(mesosystem)로서의 학교 심리학자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이후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 학교 심리학자로서 일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5~10가지의 상황을 확인해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동권리 목록을 고려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처한다.

1. 학교 심리학자로서 일하는데 있어 어떤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권리가 가장 증진되고 또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3. 어떤 권리가 가장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4.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며,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5. 권리가 증진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체계(또는 다른 기관, 지역사회 등)내에서 학교 심리학자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 토론

각각의 집단은 차트를 활용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처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각 집단들은 발표하면서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학교 심리학자의 책임감에 대한 토론을 촉진한다. 개인적인 실천가, 체계, 그리고 옹호수준에서의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예로서 이후 모듈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출처: CRED-PRO(2012). A child rights for school psychologists curriculum 중 일부 내용 발췌·정리.

(5) 요약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 사례로써 다양한 수준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실천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기획에서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한 아동권리 프로그램기획(Child Rights Programming), 아동·청소년복지 및 관련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권리지향(rights-oriented) 모니터링 및 평가 적용,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아동개입 모델 등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책 등에서 어떻게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지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 전문 인력의 인권에 기반한 실천을 위한 교육사례로써 CRED-PRO의 아동보건관련 전문 인력과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관련 전문직으로서의 청소년지도자들 역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는 실천현장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 시도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실천영역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의 영역으로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관련 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인권교육전문가 및 아동·청소년현장의 청소년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전문 인력들이 아동의 권리실현과 증진에 대해 더욱 실천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요소 탐색

1) 조사 개요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¹³⁾의 인권교육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의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인권교육 실천현장에서의 노력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및 아동복지시설·단체 종사자로서 권리교재 및 인권교육 매뉴얼 등의 개발에 참여한 개발진, 청소년지도자 권리교육을 실시했었던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과 시설현장에서 대면하는 인권이슈 및 인권교육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청소년상담복지 및 보호시설 종사자에게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참여관찰하고 관계자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심층면접은 201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먼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에서 종사하는 팀장급 청소년지도자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청소년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인권의식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보호시설(청소년쉼터)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자 및 쉼터지도자로서의 권리의식과 청소년들의 권리문제에 대해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청소년인권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부 상담복지센터는 단기청소년일시쉼터를 운영하기도 해서 쉼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질문할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와 심층면접 시에는 연구자와 해당 내용 집필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와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자와 상담자들은 대체로 인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고, 특히 청소년시설특성과 활동특성 등을 고려한 청소년인권이슈와 관련된 면접 및 토론에서 처음에는 매우 낮설어 하였다. 따라서 인권교육전문가인 집필진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면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와 함께 점점 각 시설에서의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상황에 대한 브레인스토

13)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전문직 종사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밍을 하면서 점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능한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인권관련 이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면접 마지막에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청소년지도자 본인들이 종사하는 시설과 활동의 특성,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청소년인권준중과 인권침해 시 대처방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심층면접의 반구조화된 질문 예시는 <표 II-7>와 같다.

표 II-7 청소년지도자 대상 FGI 및 심층면접 내용 예시

종사자 유형	면접 내용 예시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는 청소년시설과 대면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 청소년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활동 지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 가르치는 자, 지원자, 안내자, 촉진자, 파트너 등)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청소년 자율·자치활동에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실천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인권침해 없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권감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들을 어떻게 임파워시킬 수 있는가? ○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는 시설의 특성, 또 대면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인권이슈들이 있는가? - 대면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권이슈는 무엇인가? - 주로 어떤 인권침해 사례를 가져오는가?(예, 가정에서의 방임 & 학대, 학교폭력, 아르바이트 시 인권침해, 차별이나 편견, 성관련 문제 등) -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청소년지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을 약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식하고 있는가?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자들의 인권의식 등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 상담 시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 상담 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가? - 청소년 상담 시 상담윤리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어떤 딜레마를 갖는가? -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관련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동·청소년 학대피해 발견 시 신고의무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 상담 시 내담자인 청소년들을 통해 어떤 인권 관련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가?

종사자 유형	면접 내용 예시
	- 인권의식을 가지고 권리기반 접근이 가능하려면 청소년상담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쉼터)	- 쉼터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쉼터에서의 청소년 인권관련 이슈로는 무엇이 있는가? - 비밀보장과 같은 인권적인 이슈로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개입하는가? - 쉼터입소 청소년들의 입소절차(소지품 검사 등)와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가? - 시설운영에 청소년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시설환경 개선, 자치회활동 등) -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칙과 자율성을 원하는 청소년간에 갈등이 있는가? - 법률적 자문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공간이나 의료적 지원 등이 충분한가? -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가? - 쉼터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있는가? 등

이러한 청소년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 심층개별면접, 방문관찰 등을 통해 탐색된 인권이슈 및 인권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의 인권의식과 청소년인권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의 팀장급 청소년지도자 5명을 대상으로 FGI(초점 집단면접)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의 인권관련 내용들이 도출되어 향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1) 청소년인권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생각: 불명확하고 낯설음, 어려움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이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옴부즈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자율 활동과 자치활동, 그리고 시설운영 등에 있어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낯설어서 담당 청소년지도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특히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캠프식으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 특성상 청소년 인권을 위한 노력이 힘들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자연권 하다보면 체험활동 위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권 존중해 준다는거는 존댓말 쓰기. 그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체험활동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기합주고 막말하고. 그런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해야 하는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난치고 그러면 사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군대 교관처럼 해야할 때가 있거든요. 다나카 쓰면서. PT도 시키고 그렇다고 기합은 아니고요. 위명업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정말 힘들게 했었어요(Y 청소년수련원).

(2) 덜 존중보호받는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

청소년들의 경우 권리적인 측면에서 성인에 비해서 덜 존중받고, 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아동보다도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청소년지도자도 있었는데, 청소년현장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인권이면 뭔가 좀 특별해야 할까? 그것도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존중받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게 기성세대나 성인에 비해서 좀 덜 한거고. 오히려 어린이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C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부분은 이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때 그 학생 한 명이 그렇게 물으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인권교육 아닌 인권교육을 잠깐 실시하고. 다녀와도 되나요? 물어볼 대상이 아니다 나는. 안 가는게 아니라 갔다오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D 청소년문화의 집).

(3) 청소년이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경험의 중요성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시 물건이 파손되면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변상만 걱정하는 한 청소년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청소년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친 부위와 청소년의 안위를 걱정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모습은 청소년 스스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청소년활동현장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정확히 무슨 도구를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시설에서 반입한 물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게 있었는데. 한 친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파손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파손을 하게 되면 약간 폭발성이 있어서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떡해요’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다른 지도사가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네 다친 손은 돈 주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손부터 일단 보자라고 데리고 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는 변상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안위를 걱정해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오히려 아이가 되게 고마워하고. 부모님도 고마워하면서 아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이해해줘서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도 지도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S 청소년문화의 집).

(4) 청소년활동에서의 ‘참여’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례(예, 다문화아동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기획, 책이나 CD 등 필요한 물품은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조사 받는 등)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함양과 참여의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만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다른 내용의 인권에 대한 강조가 없었는데, 이러한 이유가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서 청소년자치 및 참여에 대한 지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자치활동의 경우 청소년참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결국 청소년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스스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겠지만 결국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지도자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밥상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다 차려놓고 아이들이 숟가락만 있는데 그거를 참여라고 하는 것 같은..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기획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든지

다 스스로 다 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부여하는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라던가 예산적인 부분이라던가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모든걸 다 한거야. 너희들이 기획 한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의 제반 사항들은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다 한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가 약간은 인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선생님들은 다 가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야지라는. 나에게 정답은 있지만 의도하려고 하는(S 청소년문화의 집).

앞세운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들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회의 그 자리에서 그 의견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거죠. 나는 A를 가려고 했으면 애들의 의견이 A를 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론상으로는 이거 애들이 A가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마 그런 딜레마는 다 있을 것 같아요(C 청소년수련관).

(5) 청소년의 안전보호와 규제, 인권침해의 대립

청소년활동시설의 지도자들은 특히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큰 딜레마가 있었다. 자연권 시설의 경우 입소 시 안전을 고려하여 소지품검사를 피할 수 없는데(예, 라이터 등의 화기 소지, 담배나 술 등 반입), 결국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일이지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의 이슈에 직면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도 많아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고민이 많았다.

수련원에서 제일 힘든 게 첫 시간에 소지품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적발이 되면 모두가 전교생이 있는 자리라서, 자기가 채수 없어서 걸렸고 아 쪽팔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개를 데리고 사무실로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그 부분에서 잘했더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만드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른인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애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명분이나 논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이야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이게 다른 건 다 떠나서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논리가 없어요(Y 청소년수련원).

(6) 청소년의 의견청취와 존중 사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려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또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지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저희도 청운이실 벽면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고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전달해서하는 것 보다 관장님에게 다이렉트로. 아이들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거죠. 그 자리에는 지도자 선생님도 참석 못하게 하고요. 시설장과 대표 면담이죠.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의견들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D 청소년문화의 집)

저희가 피드백을 설문지 밖에 못 받거든요. 학생들한테. 만족도 체크를 합니다. 분기별로. 설문지 만족도 체크를 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의 만족이 너무 낮으면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Y 청소년수련원).

(7) 청소년 인권옹호자로서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들은 과거에는 인권이라고 하면 투쟁적인 느낌이어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청소년을 위한 인권옹호자로서 부담 없이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시설에서 분실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심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 뿐 아니라 시설의 문화·환경적인 면(예, 시설장의 인권의식 등)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저는 시설에서 근무할 때 분실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이 친구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성인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가져가는 걸 봤다라고 했는데 CCTV도 없고. 늘 이용하는 친구여서 이 친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상을 해드렸는데, 기관장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아이가 훔쳤을 수도 있다고요. 지도사가 청소년이 잘못된 부분에서 책임을 저주고 경찰이 온다고 하면 정말 경찰을 막아서면서 아이 편을 들어줘야하는데 말이죠(S 청소년문화의 집).

(8) 청소년지도자에 의한 권리침해: 일방적 지시 및 비자발적 행사 참여

청소년활동시설 내 지도자의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로서 일방적으로 청소년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또 청소년들을 비자발적인 행사에 동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문화의 집 내의 댄스동아리에 사전협의 없이 직전에 공연을 통보하는 사례에서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지도자는 이러한 경우 정식으로 섭외과정을 거쳐야 함을 지적하였다.

얼마 전에도 담당지도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댄스동아리 애들을 섭외를 해요. 언제 시간되지? 그 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공연이니까 그때 참가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하는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 불러놓고 저는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거든요. 이건 정식으로 섭외를 하는거다. 적어도 행사명이 뭐며 어떤 취지이며, 시간이 가능한지, 그리고 페이가 있는지, 식사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물어야 하는거지 무조건 해라라는 요구는 문제가 있다. 지도자 선생님인데도 나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D 청소년문화의 집).

또한 청소년진로박람회나 청소년의 달 행사와 같이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큰 규모로 개최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청소년을 비자발적으로 동원시킨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청소년지도자도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참여를 강요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9) 기타 인권침해 관련 이슈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과 대면하면서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사례, 집단따돌림, 그리고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문제, 또 교복이나 의복 브랜드에 따른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편견과 차별, 낙인에 대한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성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해체 후 살 곳이 없어진 청소년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10) 인권교육사례 관찰: 심도 있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한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에서 기획한 청소년 지도자와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여관찰과 함께, 해당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청소년지도자와 권리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민권과 참여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권리’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교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인권교육기관의 의견에서도 ‘인권’, ‘권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특히 학교현장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볼 때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 편견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자와 유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참여,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이후 이들을 인근 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청소년을 교육시키는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불과 2시간 정도에 그친 정도여서 관련 내용이 좀 더 심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교육대상자 대부분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권리에 기반한 실천과 참여, 권리주체자로서의 아동·청소년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청소년지도자와의 관계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인권관련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강사의 활동중심 교육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이론 및 강의중심보다는 모둠별 활동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흥미있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이었으며, 교육주체기관 역시 그동안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왔다는 의견이어서 향후 더욱 심화,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상담 장면에서 대면하게 되는 청소년인권관련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및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상담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문제

상담원들로 하여금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한 것이다. 상담현장에서는 상담내용의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자해, 자살시도, 가출, 성폭력,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큰 딜레마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 특히 임신과 같은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여기(상담실) 안 오겠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사례회의를 하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문제를 알리라고 하지 만, 그렇게 하면 아이와의 신뢰가 깨지니까 고민이 되요(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회의의 다른 관계자들은 단기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빨리 알릴 것을 중용하지만 청소년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2) 학대발견 시 신고의무자로서의 딜레마

아동·청소년과 상담 시 학대나 가정폭력,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상담자가 파악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을 우려할 경우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갖는다.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을 참겠다는 경우에 상담원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또 이들을 지지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역할에서 딜레마를 느끼기도 하였다.

전화 상담을 하는데 분명히 아이가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참겠대요.. 이럴 때는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는 너무나 절박하게 신고도 하지 말고 부모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대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일부 상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그러나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에 ‘아동학대 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상담자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근거와 법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아동과 부모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체적 학대의 명확한 증거가 없고 반면에, 방임과 언어폭력이 심한 경우는 현행법으로는 신고해도 별다른 변화는 없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우려하는 대로 상황만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을 고려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학대(의심) 아동·청소년과 의사소통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인권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동이 가해부모를 신고하는 것에 극렬히 반대할 경우 아동의 인권과 현재의 학대행위가 어떠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상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상담자는 먼저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임파워시킴으로써 문제 상황 해결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3) 인권침해 시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청소년

상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이성친구로부터의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이들이 요즘 이성친구를 많이 사귀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사귀다가 데이트 성폭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분명히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No’를 못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실은 원하지 않았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죠. 남자아이 쪽은 절대 폭행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요(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조차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었다. 학교폭력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주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결국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폭력이 이루어짐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학습이 다 되었는데, 나중에는 더 힘들죠(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러한 사례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상황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습관이 익숙해지도록 어릴 때부터 자기주장을 포함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권리주체자로서 마땅한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인권침해를 받은 청소년의 자력구제의 어려움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의 문제제기 시 무마를 종용받거나 억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이와 관련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때 학교와 같은 주변 환경에서 이를 격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마하려는 경우를 발견한다고 보고되었다.

한 남자아이가 같은 학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에는 크게 문제라고 못 느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치욕적으로 생각돼서, 피해 청소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려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인지 학교쪽에서는 그냥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걸 아이가 느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Y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청소년 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측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5) 인권이 낮은 상담자

전화 및 심층면접 대상 상담자들의 경우 인권에 대해 낮설다는 느낌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의 가족과 학교에서의 문제발생 시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였으나 인권적인 관점을 갖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상담 장면에서 인권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은 다른 상담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인권감수성이란 단어는 기억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Y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한 상담자는 청소년과의 상담 시 상담자 자신도 모르게 배어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 스스로 통찰할 필요가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상담자들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담자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이 교복이나 의복 등으로 상대적인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 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4) 청소년보호시설의 인권이슈와 인권교육 요소

대표적인 청소년보호시설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 및 생활에서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의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파악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쉼터입소에 대한 비밀보장의 문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정부지침에는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황에서 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 문제 때문에 쉼터 입소 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경우

비밀보장의 문제와 청소년 의견존중, 또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의 부모 역할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다.

아이가 입소했는데 난 죽어도 엄마번호 모른다. 아빠번호 모른다. 연락하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꺼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저희 운영지침에 그것도 법적으로 뭐다. 이걸 아니어도. 저희가 여가부에서 일년에 한 번씩 연 초에 이렇게.. 한 번 지침을 주거든요. 한 줄 있어요. 부모에게 연락해야한다고(U 청소년쉼터).

또 다른 쉼터종사자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피해서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는 탈 가정이 그들의 생존과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청소년쉼터에서의 규칙과 규제문제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의 문제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나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쉼터종사자의 고민과 또 입소청소년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흡연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금연이 청소년쉼터 입소 후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였다.

담배 문제라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역시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냐는거죠(D 청소년쉼터).

아이들이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해요. 이것도 저희는 딜레마인데 흡연실을 만들어 달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담배를 피면 안 돼. 지위비행이야라고 하는데, 그래도 흡연실을 만들어달라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암암리에 조용히 만들어주거나 뭔가 허용을 해줘야하나 하는 고민이 되요. 그런데 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꾀초를 주워 펴요. 남자들이 버린 것들을 다 주어서 주머니에 모아서 그것을 꺼내서 펴요. 그러면 이것을 사줘야 되나? 이런 딜레마도 있어요(U 청소년쉼터).

(3) 청소년쉼터에서의 사생활 침해문제

청소년쉼터 입소 시 라이터, 칼과 같은 흉기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생활침해 논란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쉼터 이용청소년들 간 사생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파악되었다.

(소지품 검사들)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칼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칼 같은 것 다 감추고 퇴근을 하는데 갖고 들어와서 그래 버리면 제일 걱정이고. 칼로 자꾸 문신을 하니까. 여기다가. 자해를 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도 (소지품 검사 시) 동의는 구하는데 애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래도 라이터같은 경우는 불지를 수 있고 다른 시설에는 불을 지른 적도 있잖아요(U 청소년쉼터).

(한방을 여러명이 써야 해서) 전혀 인권이 보장되지 않죠.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U 청소년쉼터).

(4) 쉼터종사자에 의한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

쉼터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통제하는데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용청소년의 동성애 등과 같은 문제에서 청소년에게 심한 심리적 상처를 준 것이 발견되어 징계를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귀가시간 통제에 대한 부분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자기 인권을 잘 지켜서. 작년인가 신입생활교사가 자기도 애가 계속 간죽대고 이러니까 남자선생님이 한 대 이제 약간 때렸는데. 이걸 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경찰에서도 별거 아니니까 나왔는데. 결국 그 선생님은 한 1년 후에 그만두기는 했어요(D 청소년쉼터).

우리가 운영하는 자립팜, 자립홈이 있는데, 거기 오는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쉼터의 선생님이 개가 이제 동성애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떠돌고 집에서 나온 애인데. 쉼터 선생님이 동성애는 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나오고. 쉼터에 절대

안 간다 라고 하는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몰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큰 상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D 청소년쉼터).

(5) 쉼터청소년에 의한 쉼터종사자의 폭력 피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종사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청소년쉼터에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저희도 매를 여러 번 맞아봤거든요. 아이들한테 폭력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어요. 저희가.. 이것도 저희 딜레마죠. 내가 애한테 맞았어. 그래서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고 뜯겼어. 경찰서가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애가 어떻게 될 게 뻔히 아니까. 그냥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치료하고, 이렇게 끝나야지.. 그리고 아이 맡겨놓고 부모님이 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적인 폭력. 언어폭력. 저도 한 1년 시달림을 받았는데 죽을 것 같다 라고 경험한 적도 있어요(U 청소년쉼터).

(6) 쉼터에서의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치회의(생활회의)를 통해 규칙들을 개정하기도 하고, 쉼터종사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건의(존댓말 사용, 시설개보수 등)하면서 실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서로 생활회의를 해서 규칙도 바꾸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소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샤워하는데 누가 들여다보니까 싫으니 칸막이 해달라. 그런 것도 해주고. 반찬이 맛이 없으니까 맛있게 좀 해달라.. 또 선생님들 존댓말을 써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다보면 싫다고 또 하지말라고 그러고(U 청소년쉼터).

(7) 종교법인 쉼터에서의 종교의 자유

청소년쉼터의 경우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종교 활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로 쉼터종사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가능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적인 자유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에 강요를 했었어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러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제 아예 없어졌죠(U 청소년쉼터).

전혀 관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부분에는 있죠. 이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가치로써 들어가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된다는 그런건 없어요(D 청소년쉼터).

(8)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청소년쉼터와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또 검·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언어폭행과 정신적 폭행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대안을 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MOU 체결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계속 괴롭히는데. 거기서 답을 얻어서 해결한 적도 있었어요. 맞은 상태로 경찰서 가라. 그래서 더 맞지 않도록만 사람들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바로 접수 시켜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서 해결한적 이 있어요(U 청소년쉼터).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성매매 청소년들의 고소라든지,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에 같이 가고 하면서 옹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인권보장을 하고 있죠(D 청소년쉼터).

(9) 청소년쉼터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관련 이슈

청소년쉼터에서 입소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 아니라 낙태를 원하지 않는 17살의 청소년이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는 사레도 있었으며,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 상호간 괴롭히고 학대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임신 상황이었을 때도 그렇고 죽어도 나는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모한테 얘기하는거 싫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나 지금 몇 살이다. 나 17이다 얘기하지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U 청소년쉼터).

저희 기관 내에서 아이들끼리 괴롭히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의미없이.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잠 잘 시간에 발로 밟고 지나가요. 보기 싫으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툭 치고 가든지. 목을 확 밟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U 청소년쉼터).

제 3 장

권리기반접근의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내용 구성(안)

1.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의 주요내용

제 3 장

권리기반접근의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내용 구성(안)¹⁴⁾

1.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이해¹⁵⁾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은 인류가 최초로 합의한 ‘보편적 인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인간의 범주’로 정의하며 ‘기본적 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힘겨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

이에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총 9개의 국제인권협약을 채택하여 인간의 범주를 확대하고, 기본적 권리를 명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제정된 국제인권법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과 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중 성인이 아니기에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이들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¹⁶⁾은 18세 미만의

14) 제Ⅲ장은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장까지의 보고서 형태가 아닌 교재 또는 매뉴얼과 같은 별도의 집필방식 및 편집체계를 가진다.

15)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이해’는 정병수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이 집필하였다.

1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

모든 사람, 즉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a).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이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194개국이 비준하여 명실상부한 최다 비준국을 보유한 국제인권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권의 발전과정’과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인권의 발전과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권리(rights), 혹은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대 그리스시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다른 표현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표현인 ‘토 디카이온(to dikaiōn)’은 ‘정당한 요구’라는 뜻이다. 국립국어원에서 내린 권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토 디카이온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서에 제시된 십계명 중 ‘도둑질하지 말지어다.’라는 계명을 재산권, ‘살인하지 말지어다.’는 생명권을 함의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하승수, 2012). 이처럼 아주 오래 전에도 인권의 개념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215년 영국에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를 기점으로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을 통해 인권의 발전 속도를 높였다.

초기 인권에 대한 논의는 왕이나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발하였으며,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진다(김승훈, 2009). 세계인권선언의 명칭은 본래 국제인권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라 정의한다. 국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법령에 따라 민법(19세 미만),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9~24세 이하), 청소년성보호법(19세 미만) 등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되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였지만 이는 단지 ‘선언’에 불과하기에 상징적 의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법적구속력을 지닌 법약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1965년 유엔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로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노동자협약(1990)’, ‘강제실종협약(2006)’, ‘장애인권리협약(2006)’까지 총 9개의 국제인권조약이 탄생하였다. 이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아동이라 정의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법이다.

②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성인의 축소판’ 혹은 ‘소유물’로 취급되어 왔다. 발달적 특성이나 주체성, 존엄성은 존중받지 못했다. 17세기 중엽까지 서구에서의 아동은 성인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고 근대적 의미의 인권이 태동한 17-18세기에 비로소 아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은 약하고,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이기에 성인에 의한 육성의 대상이라 여겨졌다. 아동의 존재와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제네바아동권리선언

1.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이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2. 굶주린 아동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발달지체 아동은 회복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며, 비행아동은 갱생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아와 부랑아에게는 주거와 원조가 주어져야 한다.
3. 아동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아동은 그 재능의 개발이 결국 인류에게 공헌하게 된다는 인식 하에 양육되어야 한다.

※ 출처: 박창남·심희기·윤찬영·이찬진(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p. 7.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창립자인 영국의 에글렌타인 켄(Jebb)은 1923년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했고, 이는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the Nations)에서 ‘제네바아동권리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채택된다(여성가족부, 2012a).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글렌타인 켄이 선언문을 발표한 1923년 5월에 한국의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배포한 글 ‘소년운동의 기초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항이 포함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였다. 방정환은 효(孝)와 장유유서(長幼有序),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배 속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아동노동 폐지, 교육과 여가, 문화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어린이공약 3장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해야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禮遇)를 허(許)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해야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廢)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各樣)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行)하게 하라.

※ 출처: 이재연(1999). 소파 방정환과 한국아동의 권리. p. 114.

이후 설립된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는 별도로 1959년에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는 국제연맹에서 1924년에 채택한 제네바아동권리선언보다 포괄적으로 비차별, 아동발달을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이름, 국적, 사회 안정을 누릴 시민적 권리,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권, 아동 최우선 보호 및 구호 등의 원칙과 방임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권을 강조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유엔아동권리선언

1. 아동은 이 선언에서 언급되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무런 예외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아동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신체적·정서적·윤리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해 모든 기회와 편의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후의 적절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에게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주거 시설과 오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사회적 장애를 지닌 아동은 그의 특정한 상태에 따라 특별한 처우와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도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으려면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책임 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이 넘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나이 어린 아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그의 어머니와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공공 기관에게는 가족이 없는 아동과 적절한 생계 수단이 없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생계비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기타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7. 아동에게는 최소한 기초 단계의 의무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일반교양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능력과 독자적 판단력과 사회 윤리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쓸모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교육과 학습 지도를 책임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에게는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놀이와 오락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와 공공 기관은 이 권리가 한층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아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와 구조를 받아야 한다.
9. 아동은 모든 형태의 무관심과 잔혹 행위와 착취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최소 적령기 이전에 고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떤 경우라도 건강이나 교육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이나 도덕적 발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고용 형태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아동은 인종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해와 관용과 친선과 평화와 보편적 형제애가 충만하고, 자신의 활동력과 재능을 자신의 동료들 돕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 출처: 이종훈(2006)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서해문집.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후 유엔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아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폴란드는 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고, 이후 10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표 III-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혁

국제사회	연도		대한민국
아동권리선언(에글렌타인 쟁)	1923		어린이공약3장(방정환)
제네바아동권리선언(국제연맹)	1924		
세계인권선언	1948	1957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유엔아동권리선언	1959		
세계아동의 해	1979		
세계청소년의 해	1985	1988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1990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1991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1998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개정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협약이다. 이는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생활보호,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아동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아동은 의무교육,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마땅히 보장 받을 권리의 주체자이며 아동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착취 또는 가혹한 사법제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역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동의 정의를 협약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과 구분되는 연령상의 이유로 차별과 억압에 노출되거나 사회제도에서 소외받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Preamble, 前文)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협약의 전문은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와 배경을 담고 있다. 54개의 조항은 1~3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제1조에서 제41조로 당사국의 실질적인 의무규정(Substantive Provision)을 담고 있다. 제1부의 모든 조항들은 아동인권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명시한다.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에 대한 이행조치 규정(Implementation and Monitoring)으로 협약을 널리 알리고 실천할 뿐 아니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당사국의 의무사항과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2부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3부는 부칙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는 절차 등 행정적 사항들이 포함된다(제46조~제54조).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네 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 해석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1. 비차별의 원칙(2조):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2. 아동최상이익의 원칙¹⁷⁾(제3조): 국가기관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3.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생명권에 관한 조항에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 질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즉,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4.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제12조):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를 의미한다.

17)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은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② 8개의 클러스터¹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정부는 협약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감독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준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앞서 설명한 네 개의 일반원칙이 포함된 8개의 클러스터를 제시하여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8개의 관련된 범주로 분류한 조항을 클러스터(Cluster)라 부르며, 그 분류는 아래와 같다.

표 III-2 클러스터별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Cluster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및 내용
이행에 대한 일반조치	제4조 :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내법과 정책 조화, 아동정책에 대한 조정 및 협약 이행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확립
	제42조 :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성인과 아동에게 알릴 의무
	제44조 6항 : 국가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함.
아동의 정의	제1조 : 아동의 연령에 대한 명시. 특히 부모의 동의없이 법률, 의료, 의무교육, 노동, 착취, 결혼, 군집집, 형사책임, 알콜 및 유해물질 규제 등이 가능한 법정 최저연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일반 원칙	제2조 : 비차별의 원칙
	제3조 : 아동 최상이익의 원칙
	제6조 :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제12조 :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7조~제8조 : 출생등록,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제13조~제17조 :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제한사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보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제37조(1항) :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간적·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금지
가정 환경과 대안양육	제5조 : 부모의 지도
	제9조 :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10조 : 가족의 재결합
	제11조 : 불법전송 및 미송환
	제18조(1,2항) : 부모(보호자)의 책임
	제19조 : 아동학대와 방임
	제20조 :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

18)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RC.C.5.En?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RC.C.5.En?Opendocument)

Cluster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및 내용
	제39조 :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21조 : 입양
	제25조 : 아동이 대안양육시설에 배치 시 이에 대한 정기검토
	제27조(4항) : 보호자의 아동양육 책임
기초 보건과 복지	제3조 : 기관 시설편의의 안전, 위생 및 직원수와 적격성 감독
	제23조 :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제24조 : 최상의 건강수준 향유, 질병의 치료와 건강회복위한 시설 사용, 아동의 사망률 감소 조치, 기초건강관리위한 조치, 깨끗한 음료수와 충분한 영양식 제공, 산모 건강관리, 예방적 관리
	제26조~제27조 : 아동의 사회보장제도 권리 인정, 아동의 신체·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영양·의복·주거 보조
교육, 여가, 문화 활동	제28조 : 초등의무교육,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 장려, 재정적 지원, 고등교육 기회 개방,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중퇴율 감소 장려
	제29조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 최대한 계발
	제31조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참여,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 존중
특별 보호 조치	제22조 : 난민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난민아동 부모 추적 노력 및 협약에 의해 보호
	제32조~제37조(나항, 라항) :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최저고용연령규정, 마약·향정신성 물질 사용으로부터 보호,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보호, 아동 유인·매매·거래 방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의 체포·억류·구금은 최후수단으로써최단기간 사용
	제38조~제40조 :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학대·착취·고문 등으로 부터 치료와 회복,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 사회복귀 촉진 고려, 무죄추정 및 변론, 공평한 사법기관의 판단, 증언이나 유죄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③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제41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Survival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협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약의 내용이 네 가지 기본권에 의해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조항을 4대 기본권으로 분류하여 보면 각각의 기본권에 여러 조항이 중복되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존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실현과 연관되어 있기에 4개의 기본권으로 나눈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우선순위나 분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대 기본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용	
	세부조항	
생존권	적절한 영양과 건강관리, 의료혜택, 위생, 안전, 사고 예방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발달권	교육,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 성장,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31조	
보호권	차별로부터의 보호	제2조
	학대·착취·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	제10조, 제22조, 제25조, 제38조, 제39조
참여권	아동의 견해 존중, 의사참여, 정보접근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④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제정한 조약을 의미한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비준과는 별도로 서명, 비준, 가입절차가 요구된다¹⁹⁾.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14년 현재까지 총 세 개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 선택의정서인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는 2000년 5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으며, 당사국이 아동매매와 성매매, 포르노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19)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whatis.htm>

피해아동의 권리와 이익 보호,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이다.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역시 2000년 5월 25일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2월 12일 발효되었다. 본 선택의정서는 징집 최소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할 것과 정부의 18세 미만 아동 강제 징집 및 기타 무력 집단의 18세 미만 아동 징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CP)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 절차에 의해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국제기구에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인청원권제도로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처음에는 2년, 그 후부터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와 NGO,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라는 권고사항으로 전달하며 해당 국가는 다음 심의가 있기 전까지 권고 받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2003년, 2011년 세 차례의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로 민법상의 호주제 폐지와 남자와 여자의 혼인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상이한 것을 모두 18세로 조정하였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하고 우범청소년까지 처벌할 수 있었던 소년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비차별의 원칙을 반영한 것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김승훈, 2009).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3·4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분절된 정책을 우려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운영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비롯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에게 아동참여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보편적

출생등록,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교내·외 정치적 활동에 대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보장,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청소년 미혼모의 권리보장과 야간노동금지 및 최저임금보장 등 총 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2011년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²⁰⁾ 다음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 제출은 2017년 6월이다.

표 III-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클러스터	내 용
이행에 대한 일반조치	· 국가인권위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치 · 체벌 금지 ·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정책 검토 · 유보조항(해외입양 허가제, 아동상소권) 철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복구 및 강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아동정책 체계 정립 · 포괄적 통계 체계 구축 · 국제원조목표 달성(2015년까지 국민총생산 0.7%) · 학교교육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확대 · 아동관련 단체의 유엔아동권리협약관련 연수 실시 · 기업의 해외사업 시 아동권리 존중
일반원칙	· 차별금지법 제정 · 취약계층,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 근절 및 예방조치 수립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 ·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적용 · 아동의 견해존중과 표현의 자유 존중, 법원에서 아동 청문권 촉진 ·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권에 대한 교육을 부모, 교육기관 등에 제공
시민적 권리와 자유	· 보편적 출생신고 보장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학교 운영 · 교내외 정치활동 적극 참여 보장 · 체벌 전면금지 및 아동학대관련 대중 캠페인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확대, 신고자 안전 보장 체계 마련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대안양육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회복, 상담, 진료 절차 지원 · 대안양육 시설 아동이 부모와 연락을 지속하고,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한 아동견해 존중

2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62129&page=1

클러스터	내 용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시 미혼모의 동의절차 확립 ·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고려
기초보건과 복지	·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히 지원할 것 · 특수교사 수를 증원하고, 교사를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 보건예산 증액 및 저소득가정의 무상의료 서비스 구축 · 전 지역에 소아과진료 및 응급진료를 제공토록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제공 · 아동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 정신건강 관리정책 개발 ·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 확대 · 아동건강에 위협한 식품 판매규제 추가할 것 ·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할 것 · 아동복지예산을 위한 조항을 법률에 포함하며, 빈곤감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할 것
교육, 여가, 문화 활동	· 공교육 강화 · 여가, 문화,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 · 집단따돌림 예방, 특히 외국출신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따돌림 방지 조치
특별보호 조치	· 난민자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등록 보장 · 아동구금 배제 ·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근무 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엄격히 시행 · 아동의 근로환경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아동 근무환경의 폭력과 성추행 근절을 위한 조치 제공 및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재발을 돕는 제도 마련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없는 교화에 노력할 것 ·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법지침 고려 · 소년전문법원 설립 ·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에 의해 제공할 것 ·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은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이들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 ·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대안을 장려할 것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

①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이들을 권리의 주체이고 주체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국제인권협약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 혹은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던 전통적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의미 있는 것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이기에 정치, 사상, 지역, 인종, 민족, 신념, 종교 등을 넘어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인류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② 포괄적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협약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별도의 협약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협약이다. 이는 아동이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연령에 의해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③ 국제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와 예산확충을 위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④ 권리인식 확장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협약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협약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청소년지도자 역시 협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 이를 실천하고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권리기반접근의 이해와 적용²¹⁾

1998년 10월에 만들어진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배울 권리와 자아실현의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이 청소년헌장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보호·충족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헌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은 시대가 변하면서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권리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의 관점은 청소년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필요)를 권리로 인식한다. 그러나 욕구와 권리에선 차이가 있다. 욕구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 있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권리는 그 권리를 지켜줄 책임 있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 권리기반접근은 청소년을 그 중심에 두며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발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 사업, 기관 운영이 청소년의 인권증진의 목적을 두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인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은 청소년 활동·상담·보호 전반에서 청소년의 인권 원칙과 가치를 적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시설의 조직차원에서의 권리기반접근 활용의 방법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를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주요 의무이행자로 인식하며,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즉 청소년을 위한 모든 조직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첫째, 의무이행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돕고 둘째, 청소년이 권리주체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1) '2) 권리기반접근의 이해와 적용' 은 오선영 간사(UNCRC한국 NPO연대)가 집필하였다.

청소년헌장 (1998.10.22 개정)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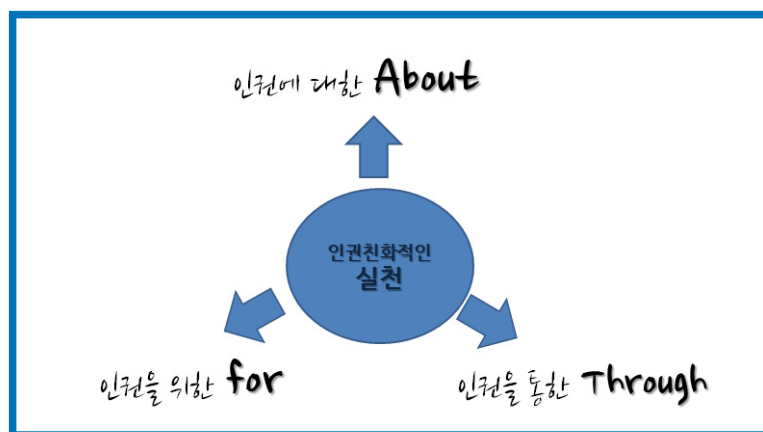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의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의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출처: 여성가족부 일반정책자료, <http://www.mogef.go.kr>.

(1) 권리기반접근이해

청소년지도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관, 사업, 활동이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위해, 인권에 대해, 그리고 인권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권리주체자에게 권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며, 의무이행자에게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처: '인권교육센터 들'의 내용을 집필자가 재구성함. http://www.dlhre.org/taster_pop.php?idx=4

【그림 III -1】 권리기반접근의 방향성

청소년을 위한 권리기반접근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포함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기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관련 법령들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기관의 존재이유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존엄한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이성적이고 도덕적 인간으로, 존엄하며 가치롭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인권적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인권을 실현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권리에 기반한 실천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기반접근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과 요소를 스탬포드 공통이해22)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입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참여하는 청소년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 참여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 전략은 사람들을 무력화(disempowering)가 아닌 자력화(empowering)한다.
- 결과와 과정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분석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춘다.
- 현지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으로 주인인식을 가진다.
- 프로그램은 불균형/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한다.
-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상황분석을 통해 즉각적, 근본적 그리고 기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한다.
- 프로그래 기획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중요하게 다룬다.
-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지원한다.

※ 출처: 이태주(2012). '개발효과성과 인권기반 ODA의 적용과제'를 참고하여 재구성.

① 필요가 아닌 '권리' 강조

권리기반접근은 그동안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이라는 욕구패러다임을 대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 권리의 패러다임은 의식주로 대표되는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시혜나 자선 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권리기반접근은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점, 잠재력에 집중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필요의 결핍은 종종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물질적 필요의 개념을 넘어서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더 포괄적인 관점을 포함한다(Boesen &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은 취약점

22) 1997년에 시작된 유엔개혁을 위한 프로그램(UN Programme for Reform)이후로 모든 유엔 산하기구들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였으나, 각자의 해석과 운영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적,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유엔 기구간의 협조, 특히 국가 공통 평가(CCA)와 유엔개발원조 프레임워크(UNDAF) 프로세스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협력에 있어, 이 접근법과 그것이 개발 프로그래밍(programming)에 가져오는 함의에 대한 공통 이해가 필요했다. 이에 2003년 5월 3일에서 5일까지 있었던 'UN 개혁이라는 맥락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실현에 대한 유엔 산하 기구 간 워크숍에서 UN기구들의 정책과 관행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권리기반접근의 관점들에 근거를 둔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로 만들어진 것이 공통 이해에 대한 이 성명서다. 이는 유엔기구들에 의한 개발 프로그래밍과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적용된다(한국인권재단a, 2012: 113).

과 한계점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그 대응 범위를 높이게 되는데, 청소년 영역에서의 권리기반접근의 범위는 취약점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권리기반접근의 PANEL원칙

권리기반접근을 청소년활동·상담·보호영역에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PANEL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PANEL은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한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권리기반접근(RBA)의 주요 특성과 원칙을 설명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PANEL은 다섯 개 원칙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문자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이다. 각 원칙의 첫 문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출처: 한국인권재단(2012b). RBA(인권에 기반한)개발협력 중급과정, p.54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함.

【그림 Ⅲ-2】 PANEL의 다섯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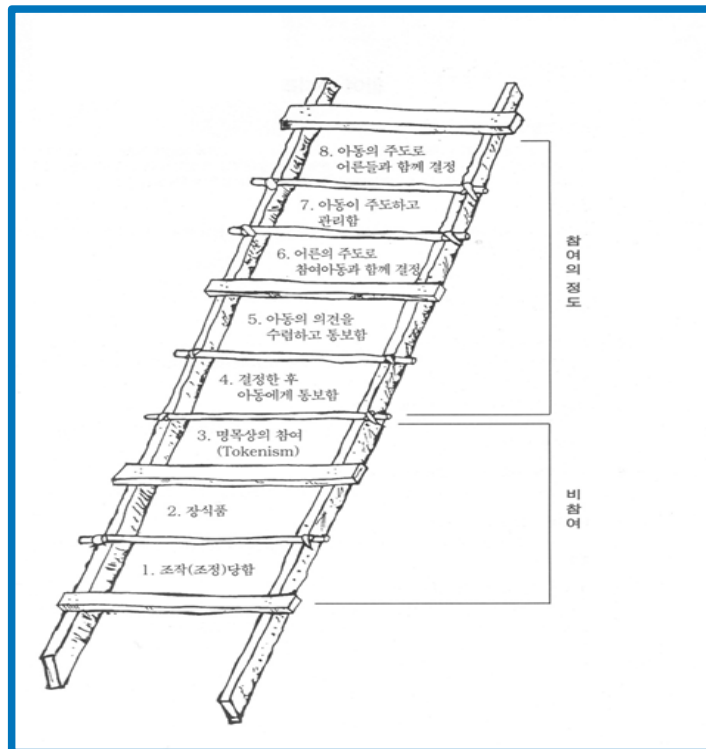
○ P : 참여(Participation)

참여는 보통 포용 또는 포함(Inclusion)과 같이 사용된다. 포용은 배제 또는 소외의 반대말로 어떠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는 능동적인 시민권의 근간으로 비판적 의식과 의사 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권리기반접근에서의 참여는 수단인 동시에 목표이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 역량강화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Hart(1997)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 없이 갑자기 책임감 있고 참여하는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참여사다리 이론을 주창했다. Hart(1997)의 참여사다리에 따르면, 청소년의 참여수준은 1단계) 조작(manipulation) → 2단계) 장식(Decoration) → 3단계) 명목상 참여(Tokenism) → 4단계) 지시와 정보 제공(Assigned but informed) → 5단계) 협의와 정보제공(Consulted and informed) → 6단계) 성인 주도, 청소년과 의사결정공유(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children) → 7단계) 청소년 주도 및 감독(Child-initiated and directed) → 8단계) 청소년 주도, 성인과 의사결정 공유(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의 8단계로 나누어진다고(최창욱, 김승경, 2010, 재인용).



※ 출처: 세이브더칠드런(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p. 127.

【그림 Ⅲ -3】 Hart(1997)의 참여사다리

그러나 이중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참여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참여는 4단계에서 6단계의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점진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관리하며 자신들에 관련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청소년정책 실행지침’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국가발전의 목표달성과 사회정의의 성취에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12).

"청소년 참여가 왜 중요한가? 가장 먼저 그것이 권리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권리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청소년이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 받는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더욱 책임 있는 시민이 될 것이다. 민주적이고 관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참여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받은 시민들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참여는 또한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유엔 청소년국, 2004

"어른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참여의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빨리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봐주십시오."

- 카이를 아즈리, 17세. 유엔아동특별총회 말레이시아 대표

※ 출처: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p. 33 일부 발췌.

○ A : 책무성(Accountability)

의무이행자는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며, 모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적 의무이행자는 법으로써 마땅히 책무성을 부여받지만 법 이전에 관계기관 스스로가 도덕적인 의무이행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 보다 자율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의무이행자가 권리주체자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컨대 의무이행

자인 국가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안적으로 시설양육을 하는 경우, 국가는 그 시설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자인 국가가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책무성 증진과 직결된다.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공적인 문서나, 결정사항, 규제 및 과정 등은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N : 비차별(Non-Discrimination)

일반적으로 차별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특징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은 평등과 함께 인권의 핵심적 가치로서 일반적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평등은 보통 비차별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하며,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간 보편성의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등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차별의 경우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직접차별은 행위자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또는 조치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년에 발표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과 같은 규약에 명문화된 영역과, 건강상태, 거주 장소, 경제사회적 상황 등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켰다(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a, 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escr/gc20>에서 재인용).

○ E :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리기반접근에서 임파워먼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권리주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임파워먼트를 통해 참여를 위한 힘을 확보해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이다. 임파워먼트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권리를 배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도 열려있어야 한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의무이행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L : 인권 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 연계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승인·실행 중인 인권기준과 개발의 목표를 연계해서 법적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국제인권의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표준 인권체계에 대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인권기준에는 인권규범과 제도를 포함하여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기준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인권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판례와 결정례를 말하며 국제적 기준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과 국제관습법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적 기준으로는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관련 법률과 판례 및 결정례를 포함하고 국제적 기준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의 표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이다.

표 III-5

한국의 주요인권협약 비준 현황

조약번호	조약명	채택일	한국 발효일
조약 제2128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980-10-25	2013-03-01
조약 제1928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12-13	2009-01-10
조약 제1828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1999-10-06	2007-01-18
조약 제1688호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2000-05-25	2004-10-24
조약 제1687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05-25	2004-10-24
조약 제1272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12-10	1995-02-08
조약 제1072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11-20	1991-12-20
조약 제1006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90-07-10
조약 제1007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90-07-10
조약 제1008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966-12-16	1990-07-10
조약 제855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12-18	1985-01-26
조약 제667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12-21	1979-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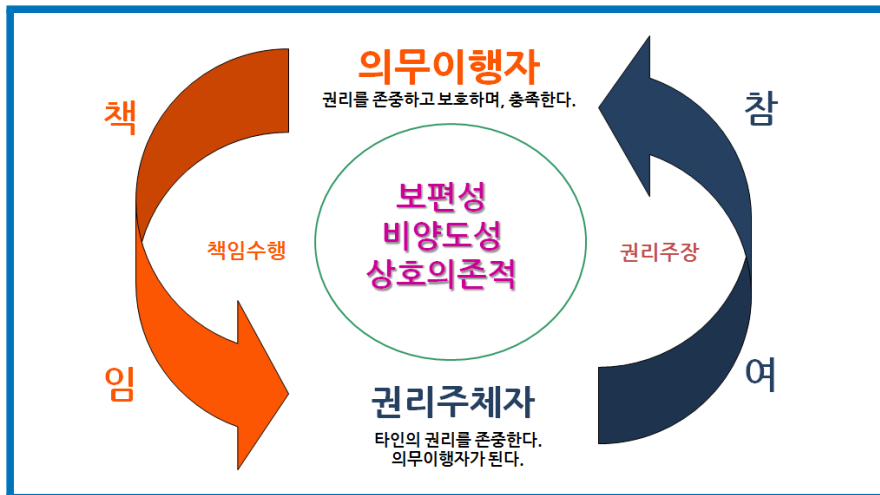
※ 출처: 외교통상부 조약정보(<http://www.mofa.go.kr>)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 의무이행자와 권리주체자의 관계

청소년은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주어진 권리의 주체자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을 ‘권리주체자’라고 하며, 권리주체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의무이행자’라고 하며, 의무이행자는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권리주체자들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의무 이행자들이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권리주체자이고

모든 인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자를 가진다. 권리기반접근은 권리주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주체자는 항상 권리의 주체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권리를 가진 주체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이행자가 되기도 한다. 권리기반접근은 의무이행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며, 권리주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각각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p. 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Ⅲ -4】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성은 의회나 정부 부처, 지방정부, 판사, 사법당국, 경찰, 교사 및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합법적 의무이행자들이다(Boesen &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에 따르면 정부와 기타 의무이행자들의 책무성은 권리주체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가 권리에 대한 인식, 지식 및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기반접근은 국가와 같은 의무이행자들이 그들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oesen & Martin, 2007).

권리기반접근은 의무이행자의 책무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에서는 국가는 부모의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부모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의 2항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 부모와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주체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시킬 의무를 지닌 이들이 의무이행자이며,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는 모든 개별 인권에 적용가능하다.

- 존중 :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 보호 :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 실현 :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의무를 말한다.

※출처: 류은숙(2008),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995>

(4)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지도자의 권리기반접근 적용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권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는 자기결정에 대한 주체로서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창욱, 김승경, 2010).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 권리나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활동을 현실적으로 억제·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할 기회를 제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과 같은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전달의 방법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최창욱, 김승경, 2010).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시설 등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는 청소년관련 시설·기관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인권 사안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자는

인권친화적인 태도와 마인드로 청소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 시설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특수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정보, 기술, 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10).

①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적 태도 함양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관련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사안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인권친화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능력, 협력과 연대, 비폭력 대화, 평화적 문제해결능력, 국제이해능력, 인권교육자로서의 지식과 기술, 인권실천가로서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지도자들이 인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개별 상황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공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 인권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회전반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출발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의 한 측면에서의 증진을 시도할 때 다른 측면에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②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환경 조성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공간과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충분하게 전달되는 것에서 참여는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결정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권리주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 아동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현재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최선의 이익은

청소년을 위한 장·단기적 이익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가와 청소년기관이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권리 간 갈등과 충돌 예방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모든 인간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대립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내에서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청소년지도자들과도 권리가 충돌하기도 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공공질서를 침해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청소년관련 시설에서는 이런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원칙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수의 권리와 소수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가능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원칙들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⑤ 청소년기관의 인권증진을 위한 목표설정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의 권리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목표들은 인권조항, 기준, 원칙들에 기초한 총괄적인 비전이며, 기관이나 특정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성과의 초점을 맞춘다(Theis, 2003: 30) 청소년 기관의 궁극적 이상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실천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들을 불가피하게 제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행정편의가 아닌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기본 원칙인 PANEL(참여, 책무성, 비차별, 권한강화,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기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 맥락분석 : 어떤 이슈, 행위자, 문제와 해결책에 집중할 것인가?
-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실행과 평가 : 프로그램 실천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맥락을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어떤 이슈가 문제이고, 권리주체자인 청소년 중 가장 취약한 청소년은 누구이고, 그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누가 의무이행자이고 의무이행자의 책무는 무엇이며, 그들이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인과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설계 시에 권리의 주체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역량강화도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청소년들이 배제 또는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간의 의사소통 기제를 강화하는 것도 권리기반접근의 근본 요소이며, 프로그램 활동과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 원칙들이 기관의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청소년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의 주요내용

1)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²³⁾

(1) 청소년활동시설의 의의와 권리기반 접근

① 초기 청소년활동정책의 인권에 대한 관점

-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시설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정책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 청소년육성을 위한 최초의 장기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중점목표는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으로 ‘청소년참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청소년육성과 보호와 함께 청소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그 근본 가치를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의 주관부처였던 당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할 거리’(프로그램, 사업)와 ‘터전’(자연공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전담지도자와 함께 덕과 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기본적인 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여 수련활동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정건희, 2014a).
-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그 동안의 일부 문제 청소년위주의 단기적, 규제적 청소년정책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청소년기본계획에는 청소년정책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의 세 부분으로 설정하고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제 보장과 재정확충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정책과제로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천정웅, 1998), 청소년활동의 비중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념과 가치 또한 청소년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인권과 참여’의 의미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1)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은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이 집필하였다.

②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발달권적 접근

-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주기별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따라 적절한 생활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이중섭, 박해석, 2006).
- 청소년의 발달권을 증진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발달과 이를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발달의 전제가 되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써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정의될 수 있다(모상현, 김영지, 2010). 청소년활동에서 발달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발달권 차원에서 문화권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 청소년인권 가운데 문화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얻을 근거가 되는 근로권을 뛰어 넘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문화권은 생산적인 활동을 준비할 권리인 교육권과 근로권에 대응하여 자신의 삶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문화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문화권이 사회적·제도적 의미로 인식될 때 본격적으로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다.
- 청소년이 문화권을 갖는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화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창출하는 것과 이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괄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문화권은 학습내용에서도 문화적인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 즉 기본적으로 문화적 창조와 향유가 가능한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최윤진, 이해주, 구정화,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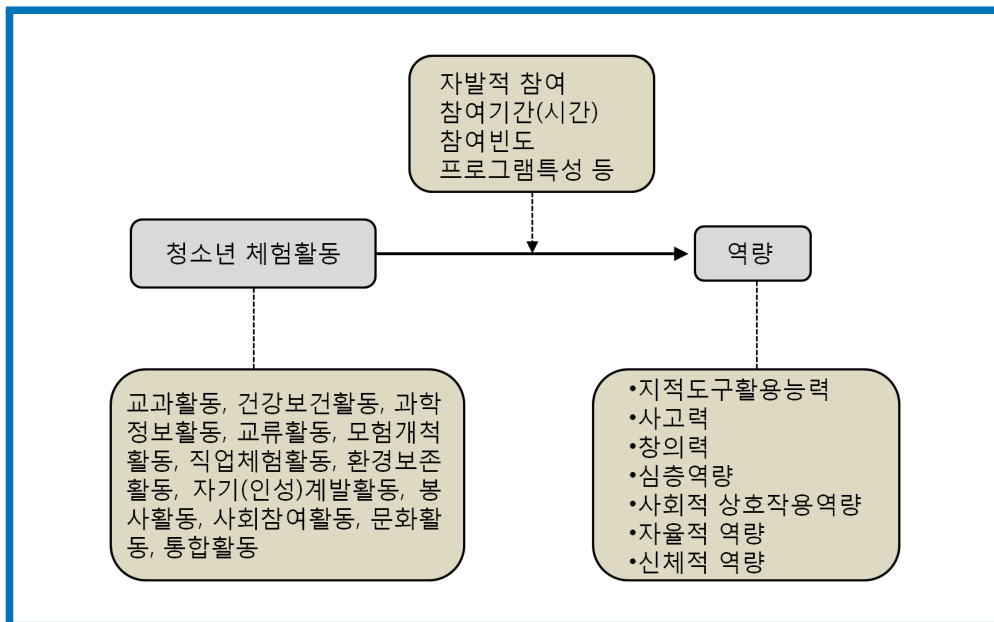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과거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행되기도 했다. 청소년활동의 양적 확충과 질적 심화를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며,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청소년 동아리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펼쳐 왔다. 특히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활동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주체적 문화향유 능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써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意識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 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과 균형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활동으로써 의도적·비의도적, 조직적·비조직적 활동을 포함하는 제반 활동을 지칭한다(이교봉, 2007). 생애발달과정의 한 단계인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규정되기도 하며 Benson과 Pittman(2001)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개념 짓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인으로서의 균형잡힌 성장을 돕는 체험활동으로 역량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므로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의 과정으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정건희, 2014a).

- Williamson(2006)은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주요 목적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민사회와 개인 핵심소양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현재 유럽의 노동시장과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량을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비형식적 학습은 더 이상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성과 경제적 능력과 역량 형성의 통합적 기여자여야 한다고 하였다(이광호, 2012에서 재인용).

③ 청소년활동시설의 개념과 참여권적 접근

-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오랫동안 아동의 권리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1924년 제네바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으로 발전하였지만 일부 청소년의 권리는 그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유엔이 정한 ‘세계청소년의 해’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985년에 열린 세계청소년회의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고 행사됨으로써 청소년이 정치적 상황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이용교, 황옥경, 김영지, 김형욱, 이중섭, 박경희, 2005).
-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 시설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자연권 및 생활권에서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기능과 활동지원이 가능한 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써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시설은 체험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이해된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최근 창의성과 인성이 강조되면서 그 수단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비록 개념의 불명확성

과 측정상의 어려움이 지적되지만(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정, 2011),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역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성은모 외, 2012).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역량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며,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 등 질적으로 우수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출처: 김현철 외(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p.31에서 발췌.

【그림 Ⅲ-5】 청소년활동과 역량과의 관계

- 청소년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에 단지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임파워먼트의 한 형태로써 ‘의사결정에 진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논의의 주요 관심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참여에 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정의에 따른 실천도 쉽지 않다. 예컨대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에도 참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McNeish & Newman, 2002).

- 청소년참여를 청소년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다. Hart(1997)의 참여수준에 따르면,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실질적 참여인 것으로 잘 못 이해될 때 명목주의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혼동이 정책과 실제에서 참여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의 개념이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정의된 것과 같이 청소년참여권의 개념도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웅, 2009).
- 참여의 개념적 접근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일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참여를 이해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을 활동 참가의 대상으로서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실제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청소년활동의 참여과정은 청소년인권의 지향하는 가치로써 나타나게 되며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청소년활동시설이 청소년들의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도 제시된 권리기반접근의 PANEL원칙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의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책무성과 임파워먼트의 기본가치와도 연결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제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 그러나 청소년참여활동은 단순히 청소년참여기구의 역할에 한정지어서는 안되며, 인권측면에서 그들이 속한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관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예, 진로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사업전반)이 권리기반접근에 따라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집중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2013년에 일어났던 태안해병대 캠프사건과 같은 비인권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가장 주요한 대처법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2) 청소년활동시설의 권리기반접근 원리 및 사업사례

청소년활동시설의 권리기반접근의 실천 예시로써, 기획 및 평가에서의 청소년 참여, 청소년자치조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및 청소년 인권주제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자연권수련 시설 등에서의 권리기반접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획 및 평가자로서의 청소년의 참여

- **원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권리기반접근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기본원리로 하여 청소년을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체로서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활동의 주체로서 또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기획,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기획에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는 지극히 친인권적인 당연한 원리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기획자로서, 그리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자로서,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권리기반접근에 따른 활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요행위자로서 인식하게 되며, 참여는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그리고 이때 전략적으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이 주도적인 기획자와 운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실천현장에서 권리기반접근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례:** 청소년프로그램으로서 지역단위의 청소년축제와 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축제기획단, 청소년문화기획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팀을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00년대 강북청소년 거리축제, 경기 평택 서부지역 청소년축제 step by step, 부천의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천에서는 부천청소년축제 기획단이, 그리고 전북에서는 군산의 청소년 문화존을 중심으로 청소년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성인위원회와 연결되어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기획자로 참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권리기반접근 적용

- **원리:** 청소년자치조직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지도자가 기획하고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청소년지도자가 일방적인 프로그램 제공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권리기반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다양한 자치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시작되고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들의 집중적인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동아리활동과 같은 자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시설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으로 객체화시키는 것이 아닌 임파워먼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역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일 수 있다.

○ 사례: 군산청소년문화의집의 초기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활동사례

이 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들은 운영법인단체(YMCA)의 역사성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행사를 포함한 운동(movement)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3.1절 기념 청소년평화제, 하령회, 동령회 등 일년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청소년문화존 사업, 지역 연합축제,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의 시설행사에 청소년지도자가 주기획자로 참여하는데, 이때 각 동아리별 발표회나 기획행사 등은 청소년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한다. 동아리들의 개별 활동의 비용도 상당수 후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였으며, 20여개가 넘는 동아리들의 연합회가 구축되어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해 왔다. 자체적인 동아리와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설과 연계하고 있어 임파워먼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권리기반 접근

- **원리:** 권리기반접근의 참여와 비차별, 임파워먼트 등이 일어나는 공간인 실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 청소년개발에서는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연결(connection), 성격(character), 돌봄(caring)의 다섯 가지의 C를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해 가도록 돕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후 여섯 번째 C인 기여(contribution), 즉 자기 자신, 가족,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 중심의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이 지역의 청소년활동의 허브로서 기능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히 청소년대상의 서비스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활동을 통해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contribution)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긍정적인 청소년개발뿐 아니라 의미 있는 권리기반접근이 될 수 있다.

○ 사례: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벽화 골목 만들기 ‘담장’

벽화 골목 만들기 ‘담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인터렉트’와 청소년 만화동아리 ‘바보만세’를 중심으로 거창의 골목길(거창군 읍 김천리 창남 길2 ~ 창남 길 4)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골목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다. 마을안의 골목길에 대한 추억과 상징성을 강조하며 골목길을 청소년이 중심으로 참여해 긍정적으로 바꾸어내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활동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주도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이 벽화 교육을 받은 후, 벽화를 그릴 마을을 탐방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완성된 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보고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많은 담장의 벽들이 작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담장의 주인분을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아이들의 목적을 잘 설명드리고
묻는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다.

이제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을 상상해
본다.

골목길 여기저기 다니며, 영준이가 묻는다.
"거창에 이런 골목길 처음 봐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

전래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가득 채울질
상상의 골목길...기대가 된다 ^^

사진에 태그하기 위치 추가 수정

투마요 · 잇글 달기 · 게시물 그만받기 · 공유하기 · 수정

【그림 Ⅲ-6】 벽화골목만들기 ‘담장’ 중간보고서 중 사진자료

참여 청소년소감

(동아리회장: 심영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벽화골목 만들기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동아리 활동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화의집을 찾았다. 선생님께 벽화골목 만들기 취지를 설명 듣고 답사를 갔다. 아직도 이런 골목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반쯤 허물어져 있는 벽과 빈집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었다.

100미터쯤 되어 보이는 골목이었다. 사전활동으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웃으며 반기는 어르신들과 문도 안 열어주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화도 났다. 힘들게 그렸는데, 다시 지워야 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반대로 너희 집에 너네가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더라면, 우리 그려놓고 가면 되지만, 집주인은 매일을 봐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때 마음을 달리 먹고 다시 그렸다. 그러다 보니 더워지고 추워지고 활동 마무리가 되었다. 내년엔 고3이 되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없는데 2학년인 올해는 주말마다 참 즐겁게 보낸 것 같다.

※출처: 오운택(2012). 거창청소년문화의집. ‘벽화골목만들기 담장’사업 중간보고서 내부자료.

④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

- **원리:**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상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 및 시설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권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일반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권리에 기반한 청소년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권이 무엇이며 실제 지역사회에 청소년인권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인권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사례 1: 은평구 청소년문화의 집/신나는애프터센터-청소년리더양성학교 ‘상상청’

청소년리더 양성학교 ‘상상청’의 목적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친화적으로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이다.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리더 그룹의 참가도 독려한다. 프로그램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주제별 특강과 영화, 리더의 역할에 대한 자세에 대한 참여형 워크숍 등으로 이어진다. 프로그램 이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기회가 부여되고 실제 지역사회 참여 등 청소년인권활동의 기회가 제공된다.

일 정	활동 주제
	내 용
【1일차】 3.22(토) 10:00~23:00	〈상상과 만나기〉 ‘인권의 재발견’
	10시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센터 소개 및 인사,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마음열기, 모둠 나누기, 규칙 정하기
	11시 특강1. 인권 ‘인권이 뭐야?’ 〈신나는애프터센터〉 · 인권의 정의 및 생각나누기, 영상1: 지식채널e ‘모든 사람 1~2부’
	12시 점심식사. ‘상상도 식후경~’ · 영상1: 지식채널e ‘피부색’, 영상2: 지식채널e ‘나는 북한사람입니다’
	14시 워크샵1. (번개생각) 우리들의 인권은 어떤가요? · 청소년이 느낀 인권침해 사례 찾아보기, 대처방안 생각해보기
	15시 특강2. 청소년 ‘청소년도 사람이다!’ 〈인권교육센터 들〉 · 청소년 인권과 사회참여
	18시 저녁식사. ‘상상도 식후경~’
	〈상상을 시작하기〉 “청소년리더십 함양”
	19시 워크샵2. 청소년이여! 깨어나라! 〈신나는애프터센터〉 · 의사소통과 결정, 과제해결 방법, 비상착륙게임 진행
	23시 취침
【2일차】 3.23(일) 08:00~17:00	〈상상을 시작하기〉 “청소년리더십 함양”
	7시 기상 · 기상미션 · 식사
	9시 워크샵3. 우리가 청소년이다!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 우리 시대의 청소년 상을 그려보기, 청소년 힘 기르기와 자아 돌아보기
	12시 상상 정리하기 · 프로그램 평가 및 사진 슬라이드 시청
	13시 헤어짐의 인사

※ 출처: 은평구 신나는 애프터센터(2014). 상상청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 사례 2: 방배유스센터-청소년인권학교

청소년인권학교는 지역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인권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방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여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방배유스센터, 2013b). 이를 위해 인권교육과 모둠별 활동,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인권동아리 활동을 실행하며 인권의식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7

청소년인권학교 일정표

날 짜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장 소
7월 29일 (월)	14:00-14:10	입학식	참가자 접수, 인사말, 일정안내 및 공지 등	4층 강당
	14:10-15:10	마음열기	레크리에이션 모듬 활동	
	15:10-16:00	인권교육	인권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현재	
	16:00-16:50	학사모 (학교에서의 사소한 모두의 이야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이야기	
	16:50-17:00	평가시간	일일 활동 평가	
7월 30일 (화)	14:00-14:20	UCC 제작 설명	UCC 제작 설명	4층 강당, 외부
	14:20-15:00	콘티 만들기	학교폭력 공익광고 조별콘티 제작	
	15:00-16:50	촬영 및 제작	학교폭력 공익광고 촬영 및 제작	
	16:40-17:00	평가시간	일일 활동 평가	
7월 31일 (수)	14:00-14:20	UCC 감상	조별 제작 영상 감상	4층 강당
	14:20-15:20	인권 골든벨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	
	15:20-16:10	나비 효과	그림을 통해 알아보는 인권 지킴의 중요성	
	16:10-16:40	다같이와 함께~	롤링페이퍼 작성, 동아리 소개	
	16:40-17:00	졸업식	수료증 수여, 평가 설문지 작성,	

※ 출처: 방배유스센터(2013a). 제15회 청소년인권학교 워크북. 방배유스센터 · 청소년인권동아리다같이. 내부자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 내부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교폭력에 대한 UCC제작,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보는 인권 골든벨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나비효과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후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방배유스센터, 2013b).

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의 권리기반접근

- **원리:**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 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과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400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305개의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시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관과 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낮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정건희, 2014b).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즉 대표성을 확보하여 실제 시설 전반의 운영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권리기반접근의 PANEL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모집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조직은 여러 동아리들 중 하나의 조직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 전체 청소년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각 동아리회원들의 대표들이 운영위원회가 되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사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및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정기회의(월 2회 개최)와 임시회의(지도자 및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원할 때)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련관 대·내외 다양한 활동 계획 및 진행, 분기별 관장님과의 만남을 통한 활동 보고 및 피드백 진행, 상·하반기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활동 조언 및 자문 활동 진행’ 등이다. 진행사업 중 우수사례로는 동작지역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작구 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대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워크숍과 자문회의 등에 참여했다. 특히 기관운영회의에 청소년 대표가 참석하여 수련관의 정책 및 비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3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상반기 평가위원회에 청소년 대표자가 참석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배유스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시설활동 모니터링, 정책 제안, 시설의 문제점 건의 등 일반적 활동과 함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동아리들의 대표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따라서 타 시설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권리기반 접근의 원칙인 참여와 책무성, 기성세대와의 차별 없음과 권한강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⑥ 자연권시설에서의 권리기반 접근

- **원리:**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자연권수련시설은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을 위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생활관과 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 녹지대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 수련시설이다. 자연권 수련시설의 활동은 짜여진 프로그램에 학교나 단체 등에서 대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무적 참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연권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에 단체나 학교와 긴밀한 소통을 함으로써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프로그램의 성격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례: 영산청소년수련원(자연권수련시설)의 ‘나의 새로운 변화’ 프로그램²⁴⁾

‘나의 새로운 변화’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극기심을 배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적 사랑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 여기는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144)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 지향, 청소년

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359호,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인증프로그램 50선.

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하여 판단력 및 협동심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144)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프로그램 50선-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359호 p. 147

【그림 III -7】 나의 새로운 변화 활동사진

본 프로그램은 2박 3일 일정에서의 첫날 입소 후 만남의 시간동안에 참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규칙 등을 작업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 활동인 공동체 활동 또한 몇 가지 선택권을 주어 활동의 폭을 넓혀서 참여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반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 또한 각 반별에 선택권을 주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연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임파워시키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한다.

활동명	내 용
만남의 시간 (십계명 만들기)	· 수련원의 딱딱한 일정표가 아닌 개성 있는 십계명을 통해 수련활동 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
G盡甘來	· 야간 산악 트레킹
ACTIVITY	· 공동체 및 챌린지 로우 활동 : 레펠, 숲이야기, 워커메이크업, 핵폭탄 옮기기, 단체줄넘기, 스피드퀴즈, 청홍판뒤집기, 왕제기차기, 파이프라인, 디스크 타겟 등
우리 반 축제 만들기 MADE IN YOUTH	· 장기자랑 연습 및 문화공연 실시
chanGe→ chanCe	· 언어순화 (육관련 강의) · 성교육, 응급처치법, 변화하는 리더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프로그램 50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359호, p. 145.

(3)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인권이슈 및 대응방안 예시²⁵⁾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관련 인권이슈들이 도출되었다. 대부분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에 필수적인 내용들로서, 특히 권리기반접근에 따라 이러한 인권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인권은 존중과 평등의 관점으로 출발점이 같도록 돕는 것

인권은 청소년이건 누구건 간에 존중되어야 해요.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의 권리인 건데 ‘청소년’을 굳이 붙여서 이걸 ‘특성화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인간으로서 가져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출발점이 같은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 공공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25) 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인권이슈 및 대응방안 예시는 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 방안’연구 수행을 위해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이다. 현재 공공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참여보장과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을 둔 삶의 실현, 특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권리기반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인권기준과의 연계를 통칭하는 PANEL은 본 청소년시설들의 정책적 이념에서의 민주시민, 참여 등의 기본 가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시설은 정책적 이념의 소산으로써의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권리기반 접근으로써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자율적 선택에 기반을 둔 참여 강조

보호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참여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 중략 ... 사실상 참여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도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다거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청소년인권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권리기반접근은 PANEL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이 중 참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기구로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평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이 주인이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이러한 참여기구에서의 청소년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할 수 있다.
- 이러한 참여기구 뿐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자치활동 조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치(自治)’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청소년 실천현장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치활동은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자치활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자치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된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생회 활동, 학급회의,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래유권자연대 등의 청소년자치기구와 중고등학생복지회, 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사이버의회, 청소년 인권 동아리 ‘타래’, 청소년포럼, 젊은 모임 등 다양하며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정건희 · 김윤나 · 최윤진, 2010).
-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러한 자치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에 ‘청소년참여’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③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사례 대처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용인이 되는지, 그렇다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련원에서 제일 힘든 게 첫 시간에 소지품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안할 수도 없어요. ... 중략 ... 모두가 전교생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개가 들키면 본인도 잘 못했다고보다 재수 없다. 자기가 재수 없어서 걸렸고 ‘아 쪽팔리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걸린 학생을 데리고 우리 사무실로 가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후략... (담배 술 등) 만드는 것도 어른이고 파는 것도 어른인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만 잘 못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애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한 거죠.

- 자연권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입소할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흥기류 등을 반입했을 때의 내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행해진 과정이었으나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권리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안전문제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 입소 전에 학교 측과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 대표자들과 미리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시설의 안전문제를 각인시키고 내부에 반입할 수 없는 술, 담배 등과 유해 물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라이터나 흉기 소지 금지 등에 대한 공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해 물질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들을 반입했을 때에 책임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유해물질과 물건들을 반입하다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등의 훈계와 관리가 아닌 가급적이면 캠프의 목적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안전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기반접근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자발성, 선택권), 책임성 등에 대해 고려하여 일단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④ 청소년참여에 기초한 안전교육 실시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바다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는 데요 ... 중략 ... 안전교육이 빠져있고 그 다음 워밍업도 빠져있어요. 안전교육과 워밍업을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자 지금부터 줄 서. 2열 이대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작하죠. 그런데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아이들한테는 충분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라니까 해. 시간 없어. 빨리 진행해야해. 빨리 줄 서라는 것. 그래서 인권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 권리기반에 의한 안전교육의 기본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동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시설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없이 형식적인 몇 가지 절차나 활동을 강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프로그램 이전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문제 또한 면밀하게 정리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자연권 시설에서도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 자연권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에 맞추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조정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및 현장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갖게 될 수 있다.

⑤ 청소년의 시설운영 참여 지원

저희 센터는 새로운 물품, 만화책, 도서, 게임 CD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조사를 받아서 구매해요.

자연권수련원의 1박 2일 리더십 캠프를 ... 중략 ... 학생들이 직접 다 짜서 온 거예요. 수련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략...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청소년들이 축제 때 뭘 할 것인지 계획 잡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죠.

- 청소년활동시설의 권리기반 접근의 핵심은 청소년의 참여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평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 시설의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권장사항이 명시된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되어 법제화 되었으며, 2006년 이후 수련시설 평가지표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항목이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책적으로도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돕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제도를 두었으나 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권리에 기반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은 청소년이 지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의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 등에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이 높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자치활동 조직들이 시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야 한다.

⑥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청소년진로박람회 같은 것들을 교육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학생들을 너무 많이 동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다 데리고 가죠.

학생들한테 흥미 유발시켜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는 설문지를 받지 않습니까? ... 중략 ... 설문지 읽어보면서 지도자들도,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질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소통하는 것 아닌가요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권리기반 접근의 주요한 원리로 청소년참여는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며, 자신의 실질적 이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권위적 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엄밀한 의미에서 참여권의 근간은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표현한 권리가 바로 참여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일정한 사적인 부분에 관해서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은 청소년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청소년시설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참여권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 하지만 대단위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일률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머무를 때가 많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비자발적인 대단위 사업의 동원에 있어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두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이전에 학교와 협의할 때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선택사항이 필요하다.
- 다만 현장 상황 때문에 학교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고 참여할 상황이라면 가급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이고 면밀한 사항을 청소년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청소년들의 제안을 받아 기획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인권옹호자로서의 청소년지도자

제가 알고 배웠던 인권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그 사회에, 그 시대의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들을 찾겠다고 운동하고 외치고 표출하는 것들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지도자로서 특히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옹호론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옹호를 할 건지, 어떻게 펼칠 건지를 모르고 어려워한다는 게 한계라는 거죠. ... 중략 ... (진행하는 사업 전반의) 해석은 이것도 인권적이다, 저것도 인권적이다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풀어나가는 과정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안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때 대응하여 관련 청소년을 옹호하기도 하며, 아르바이트 시 업주의 침해사례를 도와 청소년을 옹호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시설내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뿐 아니라 시설 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청소년인권관련 침해사례에도 청소년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문제해결의 지원자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도 인권활동가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 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보고함으로써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밟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도 역량에 따라 가능하다.
- 그러나 보다 전문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및 상담, 재할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관련전문기관과의 이러한 연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제언

-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직면하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이슈로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청소년권리 존중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과 단기적인 활동기간, 통제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및 자율적 참여 간의 갈등 등이 제기되었다.
- 청소년활동시설의 권리기반의 핵심은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 이는 권리기반접근의 PANEL원칙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가장 크게 부합하는 원리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종사자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기획 및 평가자, ③ 청소년자치조직의 운영지원자, ③ 지역사회 기반의 기여자, ④ 청소년인권주제를 통한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자, ⑤ 청소년운영위원회(참여기구)의 실질적 지원자로서의 권리기반 접근이 가능하다.
- 위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청소년활동의 기획 및 평가자로서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발전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하며, 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청소년지도자는 ‘동기유발’과 ‘변화’ 그리고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지도하고 청소년들을 임파워먼트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 참여보다는 청소년들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주인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동

아리 등의 자치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동아리 회원들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셋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을 일방적인 서비스 대상이 아닌 문제해결에 기여(Contribution)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활동 공간도 시설에 머물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 넓게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
- 넷째,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권리기반접근에 따른 청소년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권이 무엇이며 실제 지역사회에 청소년인권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가급적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자연권시설의 청소년활동은 가급적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서도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입소대상 청소년들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와 의견을 취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²⁶⁾

(1)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 목적

① 청소년상담복지의 의미

- 청소년상담은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에 속한 청소년과 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갖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며(이은경, 2012),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전문적 심리상담을 기본으로 하여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학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성덕, 2012).

②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9조].
-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0년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시작하여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울 25개소를 비롯하여 경기도 32개소, 경상남도 21개소, 전라남도 21개소 등 총 20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²⁷⁾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의 청소년 상담을 비롯하여 가출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와 학업지원,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적, 법률적 지원, 진로박람회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동일, 2008; 이은경, 2012).
- 이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기존의 상담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를 사회, 경제, 문화 등 융합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개인내·외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가능토록 하여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상담자들의 책무성 축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6)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은 정병수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이 집필하였다.

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2.asp>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표 III-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상담 연구 교육	상담 연구 교육	상담 연구 교육
	긴급구조 지원 연결협력 체계구축	긴급구조 지원 연결협력 체계구축
		복지

※ 출처: 노성덕(2012). 청소년상담복지의 의미와 과제. pp. 41~60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2)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

① 청소년 인권침해와 상담사의 역할

- 2012년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21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침해 상담사례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가 경험한 청소년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은 학대 및 방임(38.1%), 가정폭력(38.1%), 차별(13.1%), 사생활침해(6.1%)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 청소년 인권침해 상담사례와 관련한 청소년상담사의 개입 및 대응은 주로 해당 사례와 관련되어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이나 서비스 연계, 관련된 기관(학교, 사업장, 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0 청소년상담사의 인권침해 상담사례 대응 유형

영역 유형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이버
		차별	사생활	참여	체벌	근로현장	
상담지원	88.7%	71.9%	66.7%	66.7%	69.3%	39%	76.9%
시정요청		21.9%	20.5%	13.3%	22.8%	30.5%	3.8%
진정접수	3.3%	0%	0%	0%	0%	6.8%	1.9%
기타	8%	6.2%	12.8%	20%	7.9%	13.6%	17.3%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청소년권리침해예방을 위한 상담가이드. pp. 78-89의 내용을 재구성함.

- 인권침해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있어 상담이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내담자와 사회를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태아에게 있어 탯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을 비롯한 개입 및 대응과정에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2b).
 -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내담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경우
 - 시정 및 확인을 요청한 보호자나 교사 등이 비협조적인 경우
 -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관 등의 연결체계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 청소년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
 - 내담자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등)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청소년상담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는 기존의 상담업무 뿐 아니라 사례발굴 및 위기관리 역량이 강화되었고(금명자, 2008),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상담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옹호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청소년상담사는 단순한 상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것이 청소년상담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 이를 위하여 상담자는 상담이론과 기법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책, 관련기관 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2003)는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공감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인권상담이라 정의하고 있다.
- 인권이슈에 대한 청소년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은 개인 내·외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의 구제·보호·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문화와 제도, 정책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② 상담윤리와 내담자의 권리

가. 상담자 윤리

- 상담의 대중화에 따라 상담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윤리와 내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김인규, 2004).
- 내담자는 개인 내·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적극적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기에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상담 및 심리학과 관련된 주요 학회나 기관은 윤리강령을 통해 상담자의 최우선 책임은 내담자의 권리와 존엄성, 복지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 -11 내담자 권리에 관한 상담관련 학회 윤리강령

학회 및 기관	내용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10. 내담자의 다양성 존중 11. 내담자의 권리 존중 15. 비밀보호 16. 상담기록	이창호, 이한중, 이지영, 이현숙, 이경숙, 김정은 (2008). 상담근무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3. 인권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가. 내담자 복지 나. 다양성 존중 다. 내담자의 권리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한국상담학회 (2011)	3. 내담자의 복지 가. 내담자 권리보호 나. 내담자 다양성 존중	한국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sub_05_01.php?gsp_pg=view&gsp_md=gb&gsp_gb_id=171&gsp_uid=52&gsp_chgval=undefined
미국심리학회 (2010)	일반원칙 원칙 E: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학회 및 기관	내용	출처
미국상담학회 (2014)	섹션 B 기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 B.1. 클라이언트의 권리 존중 B.1.a. 다문화 / 다양성 고려 사항 B.1.b.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존중 B.1.c. 비밀에 대한 존중 B.1.d.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 B.2. 예외 B.2.a.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위해와 법적 요구 사항 B.2.b. 시한부 결정에 대한 비밀 B.2.d. 법원 명령 공시 B.2.e. 최소 공시 B.3. 다른 사람과 공유 정보 B.3.a. 부하 직원 B.3.b. 학제 간 팀 B.3.c. 기밀설정 B.3.d. 타사 지불 B.3.e. 기밀정보 전송 B.3.f. 사망한 클라이언트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http://www.counseling.org/Resources/aca-code-of-ethics.pdf

- 최근에 개정된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그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세부내용에서 내담자의 권리증진과 이에 대한 예외조항 그리고 상담자의 의무 및 대처방안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사회문제에서 내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증진하면서도 상담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담자 윤리강령의 재정비 및 상담윤리와 내담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윤리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 강화가 준비되어야 한다.

나. 내담자의 권리

- 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초기 청소년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적사항, 과거경험, 내담자의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나 상담과정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의무(비밀보장의 한계 등)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되고 있다. 청소년 내담자 역시 자신이 참여하는 상담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비밀보장의 한계,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 진단의 의미, 상담의 목적과 목표, 기법, 절차, 한계점, 유익한 면과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김인규, 2004).

○ 참여와 의사결정의 권리

내담자는 상담계획의 수립 및 진행 중인 상담계획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담 참여를 결정할 권리, 전문가를 결정할 권리, 내담자 선택 제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상담자가 추천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상담과정에 대한 논의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와 진행하고 그들의 결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에, 청소년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향자·현선미, 2008).

○ 동의능력 결여 시 권리

청소년 내담자는 미성년자이기에 자발적 동의가 불가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익과 복지를 최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상담자 또는 보호자가 내담자를 위해 대리 행사할 수 있다(김인규, 2004). 그러나 대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청소년 내담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청소년 내담자에게 최우선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내담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

가. 오리엔테이션

- 상담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내담자와 그 보호자에게 내담자의 권리를 명확히 전달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동등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전동의

-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부모나 교사에 의해 강요된 비자발적 내담자가 많으며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자로 보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경시하게 된다.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담은 치료적 가치 여부를 떠나 비윤리적 행위이기에 청소년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구축

및 가족, 교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향자·현선미, 2008). 또한 앞서 제시된 내담자의 권리와 제한점 등에 대해서는 상담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상담윤리강령 제정

-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제정한 ‘아동·청소년상담자 윤리강령’(이창호 외, 2008)은 총칙,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 내담자와의 관계, 정보의 보호, 심리검사, 상담연구, 강령의 준수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가치를 일부 공유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윤리강령을 작성 할 시, 권리기반접근을 통한 상담문화 정착이 용이할 수 있다.

표 III-1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상담자 윤리강령 비교

아동·청소년 상담자 윤리강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0조 내담자의 다양성 존중	제2조 비차별
	제30조 소수문화 존중
제5조 성실성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제4조 전문적 능력 (내담자 건강과 행복위한 능력개발)	제6조 생명, 생존과 발달
제11조 내담자의 권리 존중	제12조 참여와 의견존중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7조 비밀보호의 한계	제13조 제2항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제15조 비밀보장	제16조 사생활보호
제16조 상담기록	제17조 정보접근권
제6조 위기상황에의 대처	제19조 아동학대
제8조 상담기관과의 관계	제25조 기관에 대한 정기 감독

라. 윤리위원회 설립 및 진정절차 구조화

- 내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담과정에서 윤리적 문제 혹은 인권침해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진정접수방법과 대상, 조사 및 구제, 징계 등의 방법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마. 관련 정보 숙지 및 협력체계 구축

- 상담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담자는 보호자나 교사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시정할 의무를 지닌 보호자나 교사, 이해관계자가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 역시 무력감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하여 사전에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실에 이러한 내용을 비치해 둘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청소년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과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의 예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 상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인권침해 유형	알아야 할 법률		유관기관
아동 학대와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경찰청(112),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 청구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제44조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제46조 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권침해 유형	알아야 할 법률		유관기관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 학교폭력 신고의무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
노동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이버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홈페이지 (www.singo.or.kr), 전화(1377)

인권침해 유형	알아야 할 법률		유관기관
임신과 출산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복지급여의 내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7조의 4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스쿨맘 http://www.schoolmom.co.kr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청소년권리침해예방을 위한 상담가이드 pp. 13~71의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바. 상담자의 인권 의식 확립

- 청소년 내담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자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상담자 스스로가 권리주체자로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상담자의 인권의식 확립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이나 내담자의 권리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청소년상담자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변화시켜야 할 수동적 존재나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 혹은 연령,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청소년상담자가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청소년상담자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 및 옹호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목적이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확고한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상담자의 인권의식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인권감수성 등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상담과 권리기반접근(RBA)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3) 청소년상담 현장과 권리기반접근

- 접근방법(approach method)이란 사실, 진리, 법칙 등을 알아내거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의미하며, 접근에 따라 현상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측면은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은 동물의 일종, 신학적 접근은 신의 창조물, 철학적 접근으로는 이성적 존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유동해·하동석, 2010).
- 상담분야에서는 행동, 감정, 사고 등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중요도에 따라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인지적 접근 등의 다양한 접근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접근은 다수의 이론과 기법을 포함한다.
- 권리기반접근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권리기반접근은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라는 다섯 개의 원칙으로 설명되고 있으며(UNESCO, 2008),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참여(Participation)

- 인간중심상담에서 내담자는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문제해결의 주체를 내담자로 규정한다(이하준, 2013). 즉,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가 상담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 내담자는 교사나 부모에 의해 억지로 상담자를 찾아오며 상담자는 참여의 의지가 전혀 없는 내담자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시하지 않고, 선택과 결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권리인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 상담자와 내담자는 위계관계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보며, 상황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상담 장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내담자의 선택과 결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선택과 협상이 불가능한 욕구(예: 폭력과 차별에 대한 허용, 시간·물질 등 자원의 무한정 사용 등)와 선택과 협상이 가능한 욕구(예: 상담일시에 대한 조정, 정해진 시간의 활용 방안, 상황에 대한 반응 등)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담자의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상담에 협조적이 된다는 것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 참여는 권리기반접근의 틀을 세워나가는 기반이며, 힘이 없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자신의 삶과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다. 참여 없이 인권의 실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담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여 자신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의무이행자에게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됨을 의미한다.

② 책무성(Accountability)

중학교 1학년인 B군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ADHD로 진단되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B군의 어머니는 관심이 없다. 몇 차례 치료를 권했지만 건성으로만 대답하길 뿐이다. 이유를 묻자 상담을 받으러 오고가는 것도 일이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시겠다고 한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여차피 언젠가는 본인부담이 될 것이기에 시작도 안하겠다고 하신다.

- 권리기반접근은 권리주체와 의무이행자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권리주체자란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할 존재이며, 의무이행자는 권리주체자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기 위해 의무를 지닌 존재를 말한다. 위의 B군의 상황은 B군의 권리를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한 1차적 의무이행자인 어머니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무이행자의 의무에 대한 인식과 이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 따라서 상담자는 관련 법규와 지원이 가능한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의무이행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이 가능한 자원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면 이를 변화하기 위해 관련기관이나 정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관과 정부부처의 책무성 역시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예컨대 B군이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B군에게 닥칠 여러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담과 치료의 횟수 혹은 기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별법에 의거한 ‘방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차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차별(Non-discrimination)

청소년상담사 A씨는 어느 날, 동성애자들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B군을 목격하게 되었다. 평소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던 A씨였지만, B군을 목격하고 난 후에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다음 회기에서 B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지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은 위 사례의 A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다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을 접하게 되면 비로소 나의 생각과 가치가 구체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과정은 더 이상 상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상담자는 개인 내적 요인이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나는 순간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담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차별을 위해 상담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종교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해와 동의는 다를 수 있다.

④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강화)

B양은 반항적이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주도하고, 술과 담배는 기본이다. 집에는 잘 들어가려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한다. 학교폭력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서 B양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다루려 하지만 B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B양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일용직 노동을 하며, B양의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을 하면 아버지는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치 않는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환경에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권한강화, 권한위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즉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상담의 과정은 내담자가 힘을 갖고 삶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가르치고, 이끄는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상담에 있어 유능한 상담자는 의존의 대상이 될 요지가 충분하다. 이때 내담자를 권리의 주체자로 생각한다면, 상담자 역할은 분명해야 한다.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비계(scaffolding)가 되어야 한다.

⑤ 국제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 to human rights standard)

A군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이며, 국제결혼을 통해 A군을 낳았다. A군은 어머니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으로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다 자신을 놀리는 동급생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 결과 징계차원에서 상담에 의뢰되었다.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만나 상담하는 이들에게 국제규범은 낯설고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럴 때 상담자에게는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이 요구된다.
- 앞서 제시된 사례의 A군의 상담을 진행할 경우, A군이나 A군의 어머니는 한국인 상담자에 대한 강한 경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다문화 내담자 뿐 아니라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특수한 종교나 상황에 놓여있는 내담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상담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논쟁하는 과정이 아니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통해 특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임을 스스로 더욱 인식해야 한다.
-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 뒤에 존재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문화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상담자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근본원인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국제규범으로 두어야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4) 상담사례에서의 청소년인권이슈²⁸⁾에 대한 권리기반접근 적용

-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임파워먼트,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계라는 원칙 외에도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상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최상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 참여와 의견존중의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최상의 이익은 상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담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권리와 그들의 필요이다. 부모나 교사가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기에 내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 태도, 생각이나 신념에 의해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의도적으로 내담자를 이끌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상담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은 내담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성인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이 가진 존재적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그들의 발달적 특수성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청소년상담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인권관련 이슈를 권리기반접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내용의 비밀보장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 특히 임신과 같은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여기(상담실) 안 오겠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사례회의를 하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문제를 알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와의 신뢰가 깨지니까 고민이 되요.

- 비밀보장은 상담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윤리강령이다. 상담과정은 내담자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약속이자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담자가 원치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호자나

28) 본 상담사례에서의 청소년인권이슈는 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 방안’연구 수행을 위해 실시된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상담자들과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도출하였다.

교사에게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청소년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에게 상담의 목표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비밀 보장의 원칙 포함)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나이가 어린 내담자의 경우에도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내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앞선 사례처럼 임신 등 내담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등 보호자의 동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담자가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청소년 상담자는 보호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더라도 내담자가 원치 않는다면, 내담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의 의견은 그들의 생물학적 연령과 발달적 성숙도,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② 내담자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전화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분명히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참겠대요.. 이럴 때는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는 너무나 절박하게 신고도 하지 말고 부모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 앞서 살펴본 비밀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내담자의 의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시된 사례처럼 내담자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신고를 원치 않더라도 청소년 상담자는 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이러한 상담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초기면접에서 내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내담자가 신고도, 부모에게 고지도 하지 말 것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의 학대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 상담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경찰(112)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청소년 내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담자의 신변을 보호한 상황에서 문의 혹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변화(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 1/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원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 제한, 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에는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아동학대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신고의무는 아동학대처럼 법률로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등 내담자의 안전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혹은 내담자에 의한 피해발생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률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로서 신고의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내담자의 욕구보다는 내담자 최선의 이익,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 사실이나 신고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권리기반 청소년상담을 위한 제언

-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담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및 사회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일종의 체벌로 상담을 권고하고, 폭력과 차별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회기술이 부족한 청소년 등에게 상담은 분명 의미있는

- 역할을 하지만, 상담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상 청소년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단지 이 아이들만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 청소년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화하고, 개인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상담을 수단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이슈는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제사회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의료적, 법률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개인화하고, 심리주의적 시각에서만 접근한다면 상담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하고 소진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권리기반접근에 의거하여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의무이행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 청소년 상담현장이 권리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하여 첫째, 상담자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자의 수련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해와 문화다양성을 비롯한 인권감수성 향상 그리고 다양한 인권침해사례 대처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요구된다.
 - 둘째,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법률과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역량개발이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상담학회(ACA)는 상담자의 옹호 역량 강화를 위해 1999년 사회정의를 위한 상담자협회를 창설하여 내담자 옹호와 사회적 변화추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C. West-Olatunji, 2012).
 - 셋째, 청소년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화된 업무지침과 절차가 요구된다. 초기면접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전고지와 부모, 내담자의 동의 및 서명 절차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가 알아야 할 스스로의 권리와 규칙에 대해서는 포스터 및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상담복지센터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안에 따른 업무지침도 준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같은 법률적 상황일 경우 기관장 보고 및 유관기관의 지원요청 등에 대한 업무절차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나 임신 등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멘토나 슈퍼바이저 등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담자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 적절한 정보제공과 보호자 및 관련 기관의 협조요청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 증진, 촉진하기 위한 의무이행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상담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상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인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소년 상담자 모두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들 간의 사전실습이나 훈련이 요구된다(C. West-Olatunji, 2012).



3)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²⁹⁾

- 청소년보호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이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2004년 2월 9일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전국 103개의 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무료숙식 및 의료서비스,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는 일시보호 뿐 아니라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사연구와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및 문화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과 비행의 악순환에서 청소년 보호 및 이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돕는 공공시설로서,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I-14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구분	계	청소년쉼터 수				
		일시	단기		중장기	
			남	여	남	여
총계	103	21	26	24	11	21

※ 출처: 여성가족부(2013. 8월),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http://www.moget.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4.jsp

- 전통적인 가출 청소년 이외에도 집 없는 청소년, 보호체계 밖 가출 청소년, 전국 쉼터를 떠돌아다니는 가출청소년(일명 쉼돌이, 쉼순이), 가출청소년가족(일명 가출팸), 인터넷을

29) '3)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내용' 은 오선영 간사(UNCRC한국 NPO연대)가 집필하였다.

통해 불시에 만남을 반복하면서 가출생활을 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 청소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김용길, 2012).

- 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가정복귀, 학업, 취업에 대한 부분보다 기본생활 유지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서비스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80).

(1)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권리기반접근

① 청소년쉼터에서의 청소년 권리

-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정부의 지원 부족,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입소 청소년간의 갈등 및 각종 어려움(장애, 질병 등), 인권의식의 부족, 종교적 선택과 자유, 쉼터일 지원(식사준비와 같은 주방일), 용돈문제 등으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알고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이행자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 존중 및 보호·증진이 청소년보호시설의 존재이유, 즉 책무임을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해소 - 차별없는 삶을 누릴 권리 - 시혜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 •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를 누릴 권리 - 의료 및 건강권 -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 - 법적 제도적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보호와 자기결정권 - 종교선택의 자유 - 표현 및 정치 사상의 자유 - 외부와 소통의 자유 • 사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를 향유할 권리 - 노동할 권리 |
|---|---|

※출처: 김종운 외(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p. 27.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중, 특히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조 고유한 생명권 인정, 생존과 발달 보장 : 낙태, 신체적·지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발달
12조 의견 표현의 자유
13조 표현의 자유
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6조 사생활의 보호
17조 정보접근법
18조 부모의 책임
19조 학대로부터의 보호
24조 최상의 건강기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권
27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8조 교육권
31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연령에 적합한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권리 인정
32조 노동
33조 약물로부터의 보호
34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
35조 착취 유인이나 매매, 거래로부터 보호

② 가정의 대체역할로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청소년의 가족환경이 박탈되거나, 오히려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에 위배될 경우, 청소년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1항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3항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 출처: 외교부 조약정보 <http://www.mofa.go.kr>.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지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는 위기에

처한 컴퓨터 이용 청소년의 가정 기능이 기능을 회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컴퓨터의 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의 가정 복귀에 있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외교부 조약정보, <http://www.mofa.go.kr>.

③ 가정기능 강화와 청소년의 원가정복귀

- 청소년 보호시설은 가정해체나 청소년본인의 가출로 청소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청소년의 재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정해체로 인해 청소년이 돌아갈 집이 없거나 그 가정이 청소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체 가정을 연결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시설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청소년의 보호자들의 비협조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청소년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정의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과 보호자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편지로 소통하거나 한 달에 1~2회 정도 방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쉼터의 역할

- 청소년보호시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의거, 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조 3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및 편의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감독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성과 직원의 수, 그리고 적절하고,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가출청소년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가출 청소년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김용길, 2012).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머물고 싶은 쉼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바라는 욕구(필요)와 정책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청소년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쉼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청소년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함에 있어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일부 쉼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선서를 통해 폭력을 예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정의 폭력이나 위협을 피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오히려 권리가 침해되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폭력의 전염성을 인지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여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인권기반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규칙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인권의식

- 청소년보호시설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컴퓨터소 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권의식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보호에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들과의 따뜻한 관계 형성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청소년의 기질과 그들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소청소년 및 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입소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쉼터 운영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쉼터 내 청소년의 자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청소년이 자존감(자기 삶의 주인의식 고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년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청소년의 의견이나 행동, 태도에 있어 편견 없이, 자의적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낙인화 하지 않아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잠재능력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최소한의 의식주 보호 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출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는 자신과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강점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아웃리치를 통해 쉼터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쉼터연계활동을 하여야 한다. 아웃리치 시 적절한 장소에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청소년인권 이슈와 대응방안(사례)

- 청소년은 어떤 이유에서든 가정 또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쉼터는 청소년들이 사회인으로 건강한 독립을 할 때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주어야 한다.
-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III-15 청소년 보호시설 거주 청소년의 인권 유형

유형	하위 유형	인권보장(예시)
평등권	차별금지	연령, 성, 장애, 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생존권	의식주 생활	의식주 선택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료 및 건강	의료인 및 의료장비 구비,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안전의 권리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
	신체, 정신적 안전을 위한 권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권	자기결정권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 이·미용, 목욕 등 선택 권리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의 강요 금지
	사생활 보호권	개인물품 보관함 제공, 목욕 보조 시 프라이버시 보호
	외부와 소통	지역사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입퇴소 자유	입·퇴소 시 당사자 의지 반영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인터넷,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보장
사회권	가족권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 결혼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 할 권리
	사회보장권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에 대한 권리
	교육권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 받을 권리
	노동권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을 권리
	경제권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정치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투표권	투표에의 참여 보장
문화권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권리	자유로운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장소 및 참여 보장
법 절차적 권리	법률상의 도움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시설운영 참여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이를 표현할 권리, 시설 생활 및 운영에 있어서의 의견 반영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실천(국립재활원 케어 기술반 교육자료)'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함.

- 위와 같이 시설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인권보장 내용과, 또 앞서 언급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자가 대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① 청소년인권을 고려한 변화 촉진

사례관리자가 이제.. 문제 파악이나 강점을 찾아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저희 9개월 있을 수 있거든요. 변화라는 걸 추구해야되는 거 같아요. 애네들이 어찌됐든. 그래서 백 슬라이딩을 막아야되는데.

- 컴퓨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이미 외부의 유해환경에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관리나 자기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청소년지도자는 사례관리의 명목 하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청소년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청소년의 인권에 기반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지도자의 주도하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도 자기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내의 갈등이나 문제해결과정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연한 사고와 태도로 청소년들의 차이 인정

청소년과 함께 살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그야말로 잘 소통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유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유해약물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청소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견해와 태도를 존중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여기에 제시된 청소년인권이슈 및 사례는 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실시된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와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주로 도출하였다.

-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쉼터 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에서의 규칙을 공유하며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쉼터의 주인이 청소년 자신임을 주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되, 쉼터 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치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 해요.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떤 애들은 담배가 너무 피고 싶는데 돈이 없어 길거리 다니면서 공초를 주워 펴요. 남들이 버린 것들을 주머니에 모아 그거를 꺼내서 펴요. 그럴 때는 사줘야 되나? 고민되요.

-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심각하지만, 무조건 금연을 강제하기 보다는 청소년이 금연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제적인 접근은 앞서만 눈치 보며 금연하는 척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할 것을 명확히 알리고 금연이 어려울 때도 청소년지도자를 의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금연의지와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금연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의지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연뿐 아니라 취업이나 학력증진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 성급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청소년 스스로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금연이나, 학업, 취업 등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실패감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③ 폭력과 같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대처방안

저희 기관 내에서 아이들끼리 괴롭히고 그.. 존재자체에 대해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의미없이.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잠 잘 시간에 발로 밟고 지나가요. 보기싫으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툭 치고 가든지. 목을 확 밟고가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권고문의 45조 c)항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종사자와 청소년, 청소년 간에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합의하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 폭력사태는 시설 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에 책임이 있는 청소년들이 또 다른 쉼터로 옮겨 다니게 된다는데 있다.

누군가를 심하게 구타했거나. 음.. 뭐 또는 한 세 번 네 번 타이르고 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뭔가 계속 공동체 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이 기관과 맞지 않는 서비스인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갈 곳을 찾아서 보내죠. 그냥 이런 이야기를 다 적나라하게 다른 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안 받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 청소년들은 쉼터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공동체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경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위 ‘쉼돌이’ ‘쉼순이’만 양산할 수 있다.
-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청소년보호시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고, 실수를 했을 때에 체벌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 공동체 생활에 있어 청소년들 간 상호신뢰와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권리기반 접근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의사표현 방식을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회의, 무기명 의견함 등), 또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④ 사생활보호와 침해문제: 개인적인 공간과 CCTV설치

- 청소년보호시설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생활 보호이다. 사생활보호를 위한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일상에서 늘 논란이 되는데, 첫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는 소지품 검사다.

쉼터 들어올 때 소지품 검사하는 것도 인권침해죠. 소지품 검사 좀 할게. 미안해. 이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담배나 라이터나 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선생님들도 위협이 되고 너희들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검사 좀 할게.

- 소지품검사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청소년들 스스로 공동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나 검사를 당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과정이지만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사례처럼 왜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 사전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5명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놓고 가는 애들은 또 분실사고 생기죠. 참 많이.. 너무 많이 속상해서 CCTV를 설치해야하나.. 저는 못 설치하겠어요. 그런데 설치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 컴퓨터 내에서의 도벽 문제가 시설 종사자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되면서, 적은 수의 종사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CCTV 설치를 쉽게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민거리로 작용한다.
- 그러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존해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벽이나 분실사고는 매우 민감하고 또 청소년들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나 과정, 결정, 그리고 이후 피드백까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비밀보장

17살 여자아이가 남자랑 누워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남자가 나이가 많다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사권지가 오래된 거예요. 임신하고 낙태한 적도 여러 번 있었구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인연이 끊어졌죠. 이런 것도 고민이 되요

- 청소년들과 일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자기결정을 보장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인간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만 인격적 가치의 존중과 고유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은 또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전제가 되며, 양자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성인과의 교제로 성매매의 가능성 뿐 아니라 임신 및 낙태의 문제까지 있을 때, 이 경우 어디까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당연히 신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고 후에는 쉼터와의 관계유지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관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청소년과 쉼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밀을 유지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쉼터는 그것이 용인되는 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청소년들에게는 쉼터의 결정이 자신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시설에서의 권리침해 : 종교의 자유, 동성애 문제 등

설립 목적에 따라 예배를 강요했었죠. 무조건 9시나 10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외출도 허락을 안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외출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싫다. 주일 날 더 자고 싶은데 왜 부르냐.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중략)

-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의 모든 개종 권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선택한 종교 활동을 위해 시설로부터 물리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유동철 외, 2011: 241). 설립목적이 특정 종교적 철학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해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쉼터의 선생님이 개가 이제 동성애인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떠돌고 집에서 나온 애인데. 쉼터 선생님이 동성애는 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나오고. 쉼터에 절대 안 간다 라고 하는거죠.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변화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b, 국가인권위원회, 2006: 46에서 재인용)에서도 개인이 성적 지향 때문에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의 6항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들은 성적 지향 및 정체성을 이유로 청소년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⑦ 기타: 컴퓨터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아래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방안’ 연구를 위해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와의 면접과정에서 도출된 인권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 향상 : 학대나 방임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지도자는 이들이 잠재능력을 격려하고, 자존감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강점관점 활용 : 도벽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도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등 강점관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통제와 보호 : 보호시설 청소년들을 통제하려고만 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일탈적인 행동이나 태도, 친구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존중하고 충분히 공감하며 진실하게 청소년을 대할 필요가 있다.
- 임파워먼트 :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들을 성인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표현된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삶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각종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권과 놀권리는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권리다.

- 비인권적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 : 청소년쉼터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외부인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사가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소년지도자는 그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폭력에 대한 유연성 :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각종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들이 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폭력과 폭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위기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경찰이나 119에 연락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한 개입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문제의 현상이 아닌 근원,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사회적 피해자이며, 청소년들의 문제를 꼭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청소년들이 외부의 어떤 선입견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도 힘써야 하며, 청소년지도자들부터 스스로의 편견이나 선입견, 취향 등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제언

- 2011년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중 33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에 의거하여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 첫째, 청소년쉼터는 일시적인 가출을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집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의 이용욕구가 크다. 따라서 일시보호 중심의 청소년 쉼터 보다는 중장기 보호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중장기 쉼터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쉼터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청소년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 둘째,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청소년보호 시설의 수에 차이가 많고, 일부 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과 광주, 대전 등지에는 남자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쉼터가 아예 없고, 일시쉼터도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셋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22-b)항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는 권고에 의거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아동권리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인권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실천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은 보호시설의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이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보호자를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시설의 안정화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

쉼터에서의 공동생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제 4 장

결 론

1. 요약
2. 향후 과제

제 4 장 결 론³¹⁾

1. 요약

1997년 코피아난(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의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면서(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그동안 유엔, 유니세프,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적인 개발 및 구호사업기관과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아동관련 국제 민간사업기관에서도 권리기반접근이 본격적으로 적용,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권리기반접근을 새롭게 이해하고 청소년시설에서의 인권관련 이슈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II장에서는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와 아동·청소년분야에의 적용에 대한 국외사례를 소개하였고, III장에서는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하는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인권이슈와 이와 관련된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권리기반접근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주체자이고, 또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인력과 체계, 시스템은 이들의 권리실현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이행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무이행자는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포함되며,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권리기반접근에는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접근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특히 참여(participation),

31) 본 장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 to human rights standard)와 같은 5가지 원칙(PANEL)에 대해서는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리기반접근은 그동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환경개선, 빈곤, 보건, 교육, 구호활동 등)의 주요 접근법으로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분야에의 적용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프로그램기획(Child Rights Programming, CRP)사례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의견 존중, 그리고 학교 심리학자와 같은 관련 전문 인력의 인권교육에 있어서의 권리기반접근 사례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의사결정과정들에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권리실현의 주체자로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교육 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권리실현을 위해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청소년활동시설, 상담복지시설과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실천현장의 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인권관련 이슈들이 드러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종사하는 시설 특성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인권감수성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다. 도출된 인권관련 이슈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치·자율활동에서의 지도자의 역할과 자연권시설에서의 안전문제,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의 경우 비밀보장 및 자기결정 문제, 그리고 청소년보호시설인 쉼터의 경우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규제와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해 의무이행자인 청소년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권리기반접근의 실천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 유형별로 청소년지도자가 알아야 할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촉진하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으로써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 인권관련 이슈들의 개별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원리로 권리기반접근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2. 향후 과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인권관련 이슈들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대처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권리기반 접근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과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조직 및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권리주체자인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인권교육의 중요성

본 연구의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청소년지도자들 역시 청소년들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주체자로 보는 인식이 약하다. 아동·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및 발달을 위한 권리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의무이행자들이 제공하여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뿐 아니라 청소년과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권리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임파워먼트 뿐 아니라 인권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가와 관련 시설 및 단체와의 면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일회성의 집체교육이 청소년의 권리주체자로서의 인권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이행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까지도 포함한 균형 잡힌 관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과 권리기반접근 실천에 대한 강조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한다는 고유의 직무특성상 청소년지도자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이들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초점집단인터뷰사례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다른 어떤 유형의 시설에서 보다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지도자가 의도한 대로 분위기나 방향이 설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초의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진정한 자율 참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 이는 시설차원에서 기관장의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인권의식과 시설환경의 분위기와는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

청소년상담복지시설에서는 내담자인 아동·청소년이 상담과정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인권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문제해결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실천하기 어려웠다. 상담자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 아르바이트 시 권리침해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심리적 지지를 넘어서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권리의 주체자임을 각성시키며 입과위먼트를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상담 장면과 기술에 권리기반접근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문종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일부 상담자는 상담장면에서의 인권에 대한 기본지식 및 인권감수성 등이 부재한 이유가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주요 청소년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의 경우 입소 시 흥기반입 방지를 위한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침해 논란에서부터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규제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임신과 쉼터 내 폭력과 같은 민감한 인권이슈들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쉼터협의회에서도 2010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쉼터 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그러나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의 집체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권, 자치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자기결정과 같은 다양한 인권개념과 쉼터에서의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단기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상담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가출과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있는 인권이슈에 대한 권리기반접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유형을 망라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으며, 교육기회도 많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기억에 남아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이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과 또 교육방법에 대한 간접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일하는 전문종사자들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동·청소년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인권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 인권이슈와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관계자 및 관련연구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Tobin(2011)의 지적처럼 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 본격적인 권리기반접근의 실용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전문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청소년현장의 실천을 위한 인권교육이 더욱 보편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시설환경 조성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권리기반접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시설이나 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의 여부는 그 성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용자인 청소년과 종사자인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시설의 환경 및 조직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설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따라서 인권친화적인 청소년시설을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이면서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과 이들의 권리실현을 지원할 의무이행자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조직에서의 인권중심적인 문화적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뿐 아니라 해당기관과 조직 역시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인권의식 및 인권에 기반한 시설과 조직의 운영 여부는 청소년 권리실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에서의 도난사고에 의심을 받는

청소년을 옹호한 청소년지도자가 기관장과 갈등상황에 처한 사례는 청소년지도자의 권리기반접근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인권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에 한정한 인권교육이 아닌 기관장을 포함한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들과의 면접과정에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권리실현, 권리보장, 그리고 이에 대해 책무성을 갖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지만, 결국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무를 이행하기를 강요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시설에서의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을 불러오고,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청소년과 청소년보호자의 폭력행사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이다. 이것 역시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원활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전반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기반 실천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분야에서 권리기반접근을 가장 먼저 시도한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이러한 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친화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 내의 종사자들 역시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존엄성과 존중 및 정의(Dignity, respect & justice), 참여와 권한강화(Participation & empowerment)와 같은 원칙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를 창출된다고 할 때, 청소년시설환경에서부터 권리기반접근을 활용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에 기반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수시과제로서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청소년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자 하였다. 특히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실현하면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권리기반접근의 아동·청소년분야 적용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아동·청소년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향자·현선미 (2008). 청소년 상담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에 관한 고찰. **상담학 연구**, 9(1), 45-65.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장애인 복지시설인권교육 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인권상담시리즈 1 인권상담 가이드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4_2.jsp?m_link_url=03_sub/body02_4_2.jsp&m_id1=27&m_id2=378&m_id3=392&m_id4=411&flag=VIEW&SEQ_ID=483220 에서 2014년 6월 25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실천**(국립재활원 케어 기술반 교육자료).
<http://www.nrc.go.kr/>에서 2014년 6월 30일 인출.
- 국제인권소식 통 (2009).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http://www.tongcenter.org/escr/gc20> 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 금명자 (2008). 아동·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상담사 역할.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미래지향적 청소년상담사 역할 정립 세미나 자료집**, 3-16.
- 김동일 (2008). 상담복지 전달체계 정비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역할. **한국청소년상담원 세미나 자료집: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미래지향적 청소년상담사 역할 정립**, 33-52.
- 김승훈 (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29, 133-163.
- 김용길 (2012). 2012 청소년정책방향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012 청소년정책방향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54-85.
- 김인규 (2004). 내담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4), 19-36.
- 김종윤·이광영·김두레·송시욱·안경숙·김완규 (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 부산: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홍봉선·육혜련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노성덕 (2012). 청소년상담복지의 의미와 과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상담복지과제와 전망**, 41-60.
- 류은숙 (2008).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995> 에서 2014년 6월 29일 인출
- 모상현·김영지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자료집 : 발달권·참여권(연구보고 10-R1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방배유스센터 (2013a). **제15회 청소년인권학교 워크북**. 방배유스센터·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 서울 : 방배유스센터.
- 방배유스센터 (2013b). **제15회 청소년인권학교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서울 : 방배유스센터.
- 바스피아(BASPIA) (2009). **RBA핸드북: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해**. ODA Watch 웹 사이트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 &category=253&page=6&document_srl=774](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category=253&page=6&document_srl=774) 에서 2014년 6월 22일 인출.
- 박창남·심희기·윤찬영·이찬진 (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현정 (2012).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CSO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 연구**.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은모·이혜연·황여정·변수용·유승훈·이주석·정동원·이승재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세이브더칠드런 (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손혁상·장지순 (2011).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사업화 현황 분석과 대안적 접근 모색: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의 접목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87-110.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 청소년 권리 찾기**.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가이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윤택 (2012). **거창청소년문화의집 ‘벽화골목만들기 담장’ 사업 중간보고서** 내부자료.
거창 : 거창청소년문화의집.
- 유동철·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 (2011).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 유동해·하동석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 유해정 (2009). **인권과 발전 :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평구신나는애프터센터(2014). **상상청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서울 : 은평구신나는애프터센터.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 이교봉 (2007).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은경 (2012). 청소년상담복지의 의미와 과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상담복지 과제와 전망**, 63-77.
- 이종훈 (2006).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서해문집**.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2&cid=3437&categoryId=3437> 에서 2014년 6월 25일 인출.
- 이중섭·박해석 (2006). **청소년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연구보고 06-R05-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연 (1999). 소파 방정환과 한국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연구**, 3(2), 107-119.
- 이창호 · 이한중 · 이지영 · 이현숙 · 이경숙 · 김정은 (2008). **상담근무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태주 (2012). 개발효과성과 인권기반 ODA의 적용과제. **외교정책과 ODA세미나 자료집**, 2~10.
- 이하준 (2013). 인간중심 상담과 철학상담의 친족성 차이. **철학논총**, 74(4), 483-503.
- 정건희 (2014a).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진로활동 지원방안 고찰.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춘계학술제 자료집**.
- 정건희 (2014b). **서울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실태 및 참여수준 연구**. 서울: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정건희 · 김윤나 · 최윤진 (2010). 청소년자치활동의 실태 및 현황분석. **청소년학연구**, 17(1), 53-83.
- 천정웅 (1998). 수련활동과 ‘청소년참여’의 정책제도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231-259.
- 천정웅 (2009).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참여권 신장의 과제. **NYPI YOUTH REPOR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10-17.
- 최윤진 · 이혜주 · 구정화 (2010). **청소년인권과 참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최창욱 · 김승경 (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0-57).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하승수 (2012).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서울: 두리미디어.
- 한국인권재단 (2012a). **RBA 전문가 세미나 최종결과 보고서 : 한국CSO의 개발효과성 향상을 위한정책 제안**. 서울: 한국인권재단.
- 한국인권재단 (2012b). **RBA(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증급과정**. 서울: 한국인권재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인증프로그램 50선 : 전국청소년활동인증프로그램 수상작**.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Benson, P. L., & Pittman, K. (2001). Moving the youth development message: Turning a vague idea into a moral imperative, in Benson, P., & Pittman, K.(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ing.
- Blanchet-Cohen, N., Hart, S., & Cook, P. (2009). *Child rights in practice: Measuring and improving out impact. A model of accountability to children: A draft paper for discussion*.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Chong, D. P. (2010). *Freedom from poverty: NGOs and human rights praxis*.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09a). *General Comment No, 20*.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2fC.12%2fGC%2f20&Lang=en 에서 2014년 6월 20일 인출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09b). *General Comment No, 4*.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5&DocTypeID=11 에서 2014년 6월 30일 인출
- CRED-PRO. (2012). A child rights for school psychologists curriculum.
http://www.cred-pro.org/group/internationalschoolpsychologycurriculum?xg_source=activity에서 2014년 7월 1일 인출
- CRED-PRO. (2012) International School Psychology curriculum.
http://www.cred-pro.org/group/internationalschoolpsychologycurriculum?xg_source=activity 에서 2014년 7월 4일 인출
- Flutter, J. & Rudduck, J. (2004). *Consulting pupils: what's in it for schools?* London : RoutledgeFalmer.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 Unicef, Earth Scan Publications Ltd.
- Hunter, S. E. (2012). *Beyond Charity: the rights-based approach in Theory and Practice*. Unpublished Thesis. Boston University. Boston. MA. U.S.A
- Kennan, D., Keenaghan, C., O'Connor, U., Kinlen, L., & McCord, J. (2011). *A rights-based approach to monitoring children and young people's*

- well-being*. University of Ulster.
- Kilkelly, U. (2006). Operationalising children's rights: lessons from research, *Journal of Children's Service*, 1(4), 35-45
- Lansdown, G. (2005). *What's the difference? Implications of a child-focus in rights-based programming*. Discussion paper. London : Save the Children UK.
- Lansdown, G., Heykoop, C., & Hart, S. (2008). *CRED-PRO Child Rights Curriculum for Health Professionals*.
<http://www.rightsofthechild.org/pdf/RevisedCurriculumHealthCareProfessionalsJuly2008Canada.pdf> 에서 2014년 7월 4일 인출
- Lansdown, G., Robinson, G., & Hart, S. (2012). *Addressing the imperative for children's rights training*. https://www.crin.org/docs/FileManager/Addressing_the_imperative_for_children_s_rights_training.pdf에서 2014년 7월 1일 인출
- Lundy, L. (2007). Voice is not enough: Conceptualising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6): 927-942.
- Lundy, L., & McEvoy, L. (2012). "Childhoo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research: What constitutes a 'Rights-Based' approach?". In Freeman (Eds.) *Law and child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Neish, D., & Newman, T. (2002). Invol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decision making. In D. McNeish, T. Newman, & H. Rovers (Eds). *What works for children? Effective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pp. 186-204). Philadelphia, MA: Open University Pres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에서 2014년 7월 1일 인출
- Park, B. W. (2013).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and the roles of*

- NGOs. Master's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 Save the Children Alliance. (2005). *Child rights programming. How to apply rights-based approaches to programming. A handbook for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Members*. Second Edition, Lima : JMD Servicios Gráficos.
- Theis, J. (2003).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Experience and ideas from Asia and the Pacific. A discussion paper*.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 Tobin, J. (2011). Understanding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matters involving children: Conceptual foundat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in Invernizzi, A., & Williams, J. (eds)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 UNESCO. (2008). *Undertaking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A Guide for Basic Programming*. Bangkok: UNESCO.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Geneva : United Nations.
- Welty, E., & Lundy, L. (2013). A children's rights-based approach to involving children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12, (03).
- West-Olatunji, C. (2012). 21세기 문화 중심적 지역사회상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상담복지 과제와 전문**, 24-38.
- Williamson, H. (2006). *Youth work and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Leicester: National Youth Agency.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2호, 2012.12.18., 타법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8.] [법률 제12681호, 2014.5.28.,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35호, 2014.3.24., 일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536호, 2014.3.24., 일부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48호, 2013.7.30.,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330호, 2014.1.21., 일부개정]

【참고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일반정책자료. <http://www.mogef.go.kr>

외교통상부. 조약정보. <http://www.mofa.go.kr>

인권교육센터 들. http://www.dlhre.org/taster_pop.php?idx=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2.asp>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whatis.htm>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순)

◆ 집필진 ◆

오 선 영 (UNCRC 한국NPO연대 간사)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

◆ 자문진 ◆

김 인 규 (한국수련시설협회 부장)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형 옥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안 혜 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주무관)

이 경 주 (성남시청소년재단 활동진흥팀장)

이 명 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기관)

이 성 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 시 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장 혜 영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정 진 선 (청소년희망센터 팀장)

지 수 연 (청소년희망센터 실장)

수시과제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 방안

인 쇄 2014년 7월 20일

발 행 2014년 7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